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서 인권의식 제고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서 인권의식
제고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정책기획연구실
연구관 김 지 선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5
제3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7
제2장 이론적 배경	10
제1절 인권과 경찰장구의 의의	10
1. 인권의 의의	10
2. 경찰장구의 의의	14
제2절 경찰권 행사에 있어서 인권보호의 법적 토대	21
1. 경찰장구 사용의 근거가 되는 법의 인권보호 내용	21
2. 경찰의 인권보호 관련 법령의 내용	25
제3절 선행연구와 외국의 관련 사례	29
1. 경찰 장구 사용과 인권보호에 관한 선행연구	29
2. 외국 경찰의 수갑 사용 방법	31
3. 외국의 인권보호 사례	37

제3장 장구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현황과 인권의식 분석 40

제1절 경찰장구 사용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분석 41

-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례 분석 41
- 2. 수갑 사용 권고 사례 중점 분석 45

제2절 인권의식과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델파이 조사 54

- 1. 전문가 그룹 선정과 1차 분석 결과 54
- 2. 2차 객관형 질문지에 대한 응답결과 분석 59
- 3.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 65

제3절 인권업무 담당자 설문 조사 결과 분석 66

- 1. 설문 조사와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분석 66
- 2.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른 차이점 분석과 제안점 도출 77

제4장 인권의식 제고 방안 81

제1절 장구 사용에 대한 절차적 민주성 확보 81

- 1. 장구 사용 절차의 엄격한 준수 81
- 2. 경찰 재량권의 구체화 82

제2절 인권의식의 변화를 위한 시민 점점 확보 83

- 1. 시민과 경찰의 인권 책임성 제고 84
- 2. 민원센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점점 마련 84
- 3. 언론 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85

제3절 인권보호 관련 시스템 측면 개선방안 86

- 1. 경찰청 인권위원회 활성화 86
- 2. 인권센터의 확대 방안 87

제4절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88

1. 인권센터의 소규모 그룹 학습 활성화	88
2. 상시학습제도의 활용	89
제5절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	89
1. 인권보호 노력의 성과평가 반영	89
2. 시민 참여 유도	90

제5장 결론 **93**

표 목 차

<표2-1 > 2013년 현재 경찰장구 보유 현황	16
<표2-2> 수갑의 종류와 현황	18
<표3-1> 최근 5년간 인권침해 진정·권고 현황	41
<표3-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경찰청 조치 내용	43
<표3-3> 권고유형별 건수	44
<표3-4> 사례분석을 통한 장구사용 인권침해 사례 건수	45
<표3-5> 최근 5년간 경찰장구 사용 관련 인권침해 결정 사례	47
<표3-6> 델파이 제1차 질문지 구성	55
<표3-7> 2차 객관형 질문지의 구성	59
<표3-8> 인권의식에 대한 인식 정도	61
<표3-9>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인식	62
<표3-10> 인권의식 제고 방법에 대한 견해	63
<표3-11> 장구 사용과 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	63
<표3-12> 인권교육 방법에 대한 의견	64

<표3-13> 인권의식에 대한 인식 정도 비교	68
<표3-14> 인권업무 담당자의 인권의식에 대한 인식 의견 빈도	68
<표3-15>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인식 비교	70
<표3-16> 인권업무 담당자의 장구 사용 인식에 대한 의견 빈도	70
<표3-17> 인권의식 제고 방법에 대한 견해 비교	72
<표3-18> 인권업무 담당자의 인권의식 제고 방법에 대한 의견 빈도	73
<표3-19> 장구 사용과 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 비교	74
<표3-20> 인권업무 담당자의 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빈도	75
<표3-21> 인권교육 방법에 대한 의견 비교	76
<표3-22> 인권의식 제고의 문제점과 제안점	79
<표4-1>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인권의식 제고 기본방향과 대응방안	91

그 립 목 차

<그림2-1> 연구의 흐름도	40
<그림3-1> 최근 5년간 인권침해 권고 건수의 변화	42
<그림3-1> 최근 5년간 인권침해 권고 건수의 변화	4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배경

경찰활동의 기본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경찰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물리적 행사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찰관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엄정한 법집행과 인권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병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21세기 시민들이 바라는 경찰상은 공정한 법집행자이면서도 인권보호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친절하면서도 공정한 이웃과 같은 경찰상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중심 현장치안을 추구하기 위해 경찰 스스로도 요청하고 있다.¹⁾ 급변하는 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찰의 역할은 사회 안전과 질서유지로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의 활약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경찰은 이웃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시대에 시민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경찰에 대한 기대치의 상승은 비단 사회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빠르

1) 경찰청, 2013 경찰백서, 경찰청, 2013, 48-50쪽.

게 변화는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개인의 성취도 향상과 시민의식의 성장에 따른 개인적 요인에 의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시민이 경찰에게 요청하는 치안수요도 가중되고 있다. 경찰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는 물론이고, 범죄에 대한 빠른 예측과 예방활동, 대국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방안을 개발해야 하고, 이웃과의 연계 활동, 나아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떤 일이는 해결해주는 다방면의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인권에 대한 시민의 인식 변화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자기희생이 강조되던 산업화시대를 지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제 외적 만족도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²⁾ 개인의 삶과 인격 존중이 중시되는 시대에 살게 되면서 현대에 우리가 정의라고 부르는 것은 행복, 자유, 미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행복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다수의 풍요로움에 기여하는 것이고, 자유는 다수의 힘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며, 미덕은 좋은 삶과 밀접히 연결되는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³⁾ 이러한 현대사회의 가치 변화는 인권에 대해 여러 가지로 되새기게 되는 환경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의 맥락에서 국제사회는 인권을 위한 각 국가의 노력을 요청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십여 년간 사회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인권 관련 이슈에 대응하면서 인권상담을 기본으로 진정사건과 민원에 대응하고 있

2)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1970년대 이후 증폭되었으며, 20세기 초 산업화 단계에서 발생한 개인적 권리 침해, 생활의 여유 박탈, 자기개발 기회의 포기 등 부정적 요인들이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20세기가 '삶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시대이다(김지선, 경찰공무원 퇴직준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쪽.).

3) 마이클 샌델(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16-22, 33-36쪽.

다. 형사사법기관의 경우 경찰청에서 처음으로 2004년 혁신기획단 피해자보호T/F를 구성하였고, 2005년 경찰청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인권보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⁴⁾ 2005년 검찰청에서는 인권침해신고센터를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민원실에 설치하였다. 2006년 법무부 인권국이 신설되어 인권침해 신고센터, 성희롱고충상담센터, 장애인차별시정명령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인권국 인권지원과에서는 피해자보호, 여성과 아동인권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⁵⁾

그러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찰업무는 물리력을 수반하는 활동이기에 경찰력 과잉행사, 절차준수의 미흡, 부적절한 언행, 수사공정성의 부재, 경찰조지 미흡 등의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전체 진정 건수 대비 권고 결정은 2012년 4.3%, 2013년(10월말 기준) 2.8% 비율을 차지하였다.⁶⁾ 그 비율은 낮지만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권고는 0% 비율을 지향하여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2. 연구의 목적

지난 10여 년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장구와 인권침해 관련 권고는 절차적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권침해를 인정해왔으나, 최근 3년간 일반적인 장구 사용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수갑·포승 언론노출 금지”, “감정적

4) 경찰청에서는 인권중시 국민우선 형사활동 정착을 위한 평가요소를 정비하였고, 인권친화적 수사활동을 추진한 바 있으며, 경찰관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해 인권경찰서 시범운영, 인권영화제 개최, 인권조사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경찰청, 앞의 책, 2013, 126, 185-188, 383-387쪽 참조).

5)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참조.

6)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경찰에 대한 진정 건수는 1,220건이었으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52건을 권고하였다. 2013년 10월말까지 진정 건수는 1,053건, 권고 건수는 30건이었다. 권고의 내용에는 교육, 정책 시정, 징계 권고, 고발 등이 있었다(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수갑 사용 금지” 권고조치에서 “뒷수갑 금지 원칙”, “수갑 꼭 채우지 말라”는 권고조치로 변화된 것이 그것이다.

2009년에는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용변을 해결하게 하여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건에서는 해당 경찰관에게 경고조치를 권고하였지만, 뒷수갑 금지의 원칙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었다.⁷⁾ 그러나 2013년 2월 경찰관이 수갑을 채운 피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시갑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손목 부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신체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여 해당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을 주의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와 함께 경찰청장에게 수갑 사용 제도 개선 방안 이행을 권고하는 등 강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⁸⁾

그러나 치안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2013년 1월부터 발생한 피의자 도주사건과 관련하여 허술한 수갑 사용의 원인 중 하나로 수갑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권고에 따른 현장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압박감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치안 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뒷수갑 금지 원칙은 지나친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⁹⁾ 치안 현장 경찰관의 이와 같은 생각은 장구 사용에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스트레스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상대적으로 경찰관의 재량권을 축소시키고 법집

7)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건: 09진인532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2009.07.17.)

8)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건: 13진정0194800 과도한 수갑사용 등 인권침해(2013.06.12.);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수갑의 재질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수갑사용의 과잉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 ‘이중잠금 원칙 명시 등 수갑사용 규정 마련 권고’와 2012년 ‘장구사용보고서 및 체포·구속인 신체확인서 작성 등의 규정에 따른 작성을 업무 점검하여 장구사용에 대한 사후통제절차 강화 권고’를 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3.07.11.).

9) 2013년 1월 전주완산경찰서 효자과출소 절도범 도주사건, 5월 이대우 남원지방검찰청 도주사건(검찰청의 사례이나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검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슈화되었던 상황으로 예시에 넣었음), 7월 중암경찰서 장위지구대 절도범 도주사건, 7월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절도범 도주사건 8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사기범 도주사건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지난 8월부터 11월 사이 현장 경찰관과 생활안전과 담당자 면담에서 공통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행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의한 것이라고 하겠다.

최근 경찰은 장구사용 매뉴얼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술한 수갑의 사용에 의한 피의자 도주 사건 발생에 대해서는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매뉴얼의 재점검을 실시하여 피의자 도주방지 세부지침을 세웠고, 수사절차상 장구사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또한 장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장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강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찰활동의 기본이 되는 인권의식 제고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는 미온적이었다. 경찰의 확고한 인권의식의 확립은 경찰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을 줄이고 공정하고 명확한 법집행력을 확보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장구사용에 있어서 인권의식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장구 사용에 있어서 인권보호 방안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치안 현장에서 인권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업무환경 형성,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인권보호를 위한 조직의 변화, 나아가 인권보호와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한 시민과 경찰의 인식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경찰장구와 인권에 대한 개념 정리와 선행연구 검토를 위해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해외 인권보호 장구사용 관련 사례 조사, 선행연구

검토, 법령의 검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역시 문헌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인권침해 사례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결정례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2013년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검색하여 최근 5년간의 사례를 취합하여 재정리하여 실시하였다. 총 148건의 사례 가운데 23건의 경찰장구 사용과 직접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실증연구로는 델파이기법과 설문지조사법을 병행하였다.

먼저 아직까지 예측된 바 없는 사례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는 델파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치안 현장 인터뷰(8~9월)를 통해 나타난 인권보호의 문제점과 사례 분석을 통해 나타난 인권침해의 내용을 반영하여 델파이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델파이 질문지는 2명의 전문가에게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질문 문항을 변경하여 구성하였다.

1차 전문가 델파이 분석은 현장실무자, 인권보호담당자, 학계 전문가, 관련 전공자 10명을 대상으로 10월 15일에서 11월 15일까지 실시하였고, 이 가운데 7명이 응답하였다. 1차 질문지에서 도출된 결과로 주요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객관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2차 전문가 델파이 분석에 활용하였다. 2차 분석에서는 좀 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인원을 추가하여 9명에게 결과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성이 예측되었다.

다음으로 델파이 분석을 통해 나타난 제 요소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서 인권의식 제고 방안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전국의 인권업무 담당자와 평소 인권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

는 인권교육 심화과정 수강생에게 12월 10일 배포하여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그 대상은 각 기관 근무자로 경찰청 14명, 지방경찰청 16명,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22명, 총 52명이었고 응답자는 41명이었다. 2차 조사와 검증조사를 위한 설문지의 통계처리는 IBM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텔파이 질문지와 설문지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서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기본 방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정하였다. “인권”의 개념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개념에 따랐으며, 이에 대해서는 철학적, 법학적 인권에 대한 여러 서적의 개념을 참조하였다. 경찰 장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기재된 장구를 중심으로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하였으나, 사례연구에서 주로 수갑으로 인한 인권 침해 내용을 검색하여 경찰장구 가운데 수갑을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전문가 그룹에 현장실무자, 인권보호담당자, 학계 전문가, 관련 전공자를, 설문 대상자는 전국 인권업무 담당자와 인권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현직 경찰관과 공무원으로 한정되었다. 연구 초기에는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표본 추출의 어려움과 연구 방향성에 의해 이 부분은 배제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사례연구는 인권센터의 자료를 확인하여 실시하고자 했으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인권침해 결정례 가운데, 연구자가 침해 사례를 추출하고 다시 직접적인

경찰장구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만 재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이 사례 가운데 경찰활동 중 광범위하게 인권의식이나 인권보호 내용이 수록되는 수사는 되도록 제외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경찰장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례는 지구대와 경찰서로 구분되는 정도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수사와 생활안전(지역경찰)에서 발생한 사례를 전부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경찰장구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에서 나타난 경찰장구는 대부분 수갑이었으며, 포승·경찰봉·케이블타이에 의한 사례는 매우 적었다. 또한 대부분이 수갑과 함께 사용된 사례여서 이 연구에서 경찰장구는 수갑에 대한 내용으로 범위가 한정되었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한계는 첫째, 선행연구의 부족, 둘째, 인권관련 통계 부족, 셋째, 전문가 대상 질문지 회수의 어려움이었다.

먼저 선행연구의 한계는 경찰장구와 인권을 결부지어 연구된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선행연구는 주로 수사절차상 인권침해에 관한 내용의 연구들이었고, 장구 사용에 대한 법적 토대 연구들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경찰의 재량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경찰장구 사용의 한계성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최근 연구가 몇 건 이루어져 참고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이거나 이론적 연구에 그치고 있어, 경찰장구 사용과 관련하여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구체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결국 경찰의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라 선행연구 고찰 역시 장구 사용과 관련된 법 근거에 대한 연구, 인권보호를 위한 대응책 연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뿐, 경찰장구 사용과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의식을 연계한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선행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인권에 대한 연구 자체가 철학적 측면을 내

포하고 있고, 경찰활동 전반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기는 하나, 인권 보호가 직접적 경찰업무 그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관심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찰 내부에서도 인권의식이나 인권보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인권보호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실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인권보호와 경찰활동을 복합적으로 연구하는 방법 자체가 용이하지 않아 선행연구가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되나, 21세기 경찰활동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과 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경찰활동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향후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인권관련 통계 부분 내부시스템은 접근할 수 없었고, 인권침해 유형별로 정리된 시스템이나 통계도 부족하여 자료의 수집이 원활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검색하여 사례조사를 하였는데 각 사례별, 유형별 분류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결정례의 사건 제목도 경찰장구가 들어가 있다고 하여도 해당 부분이 기각되었거나 장구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다. 인권침해 사례 관련 통계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 차례 재분류하는 작업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델파이조사에서 질문지 자체가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당한 시일이 지체된 후 회수가 가능하였다. 많지 않은 표본집단에서 충분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델파이 분석 기법을 활용하는 연구에 있어서 한계라고 하겠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인권과 경찰장구의 의의

1. 인권의 의의

가. 인권의 개념

인권에 대한 이론은 철학과 신학에서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로 논의되어왔다. 특히 인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 범주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인권의 범위, 인권의 개념적 정당성에 근거한 보편성, 인권의 배경이 되는 환경에 주목하는 상대성에 대한 논의까지 다양하여 현재 그 개념에 대해 합의적인 관점을 찾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¹⁰⁾

일반적으로 인권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인간은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이것은 침해될 수 없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¹¹⁾

법학에서의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 즉, 헌법에서 말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주체가 가지는 힘을 이야기한다. 신학에서는 인간이 태어날 때

10) 최철영, 인권, 생각의 차이 또는 사람의 차이, 열린길, 2010, 3-9쪽.

11) 임창호, 경찰 인권침해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제3호, 2013, 105쪽.

부터 타고난 당연하고 보편적인 가치라고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인권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연구 수행을 위해서 상대적 관점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현대적 개념으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였다.

사전적 의미로서 인권(人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는 법률적 개념을 따른다. 따라서 인권에는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광범위한 가치들이 포함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현대 인권의 개념이 법학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으로 인권이란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 따르고 있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 제10조)”,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라고 이해하면 되겠다.¹²⁾ 즉, 경찰활동에서 인권이란 법률적 개념에서 인정된 모든 인간이 갖는 존엄성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나. 인권과 유사한 개념

유사개념으로 윤리(倫理)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나 규범을 말하며, 도덕은(道德)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道)를 체득한 상태(德)를 일컫는 말로 오늘날에는 윤리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즉 도덕이란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이법(理法, 다스리는 방법)이다.

12) (경찰청)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도 제2조 제1호에서 인권의 개념을 이 법률에서 이르는 대로 따르고 있다.

경찰활동에서 경찰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가치는 결국 경찰조직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의해 실현된다.¹³⁾ 따라서 경찰윤리란 경찰공무원이 경찰업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경찰조직이 추구하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code of conduct)을 의미한다.¹⁴⁾

윤리와 도덕은 인간의 존재로서의 기본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 덕목은 경찰활동에 있어서 기초가 되며, 이 덕목을 잘 갖추어야 나와 상대방의 인권에 대한 이해가 용이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인성교육을 강조하여 신규채용 때부터 인성과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현직 경찰관에게도 직무교육 등을 통해 경찰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탈규제와 사회의 가치갈등의 증폭이 가속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 의미의 경찰활동은 범죄단속과 무관한 비권력적 활동으로 그 범위는 갈수록 넓어지고 있으며, 이는 1998년 경찰서비스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으로도 사회봉사와 서비스 차원에서 경찰 역할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경찰활동에 있어서 인간의 양심과 규범에 따른 도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개인윤리와 사회제도와 규범을 준수하는 사회윤리, 공직자가 지켜야 할 공직자윤리의 수준이 더 높게 요구될 것이다. 또한 그 업무 범위가 넓기에 경찰활동은 청렴성, 공정성, 용기, 관용, 정의감, 봉사정신과 같은 덕목을 요구하며 철학적 가치탐구가 반드시 요청된다고 하겠다.¹⁵⁾

이와 같이 경찰에 요구되는 다양한 가치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의 해결

13) 이영남,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경찰윤리 확보방안,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2013, 282쪽.

14) 이영남,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정착화 방향,” 한국경찰연구 제7권 4호, 2008, 75-76쪽.

15) 조철욱, 경찰윤리학. 대영문화사, 2012, 15-21쪽.

사로서 활동하게 되는 경찰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권력적 강제작용인 경찰활동은 시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사회질서 유지와 함께 인권보호라는 덕목을 특히 강조하여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인권 개념의 변천사

인권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는데,¹⁶⁾ 중세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을 반영한 철학이 발전하였다. 이후 인권의 개념은 18~19세기 절대주의에 대한 투쟁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었는데, 산업혁명 시기인 이때 사회적 상황에 에 인권사상은 노예제의 폐지, 노동법의 제정, 공공교육 실시, 노동조합의 인정, 보통선거권 실시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20세기 현대에 이르러 모든 인간은 일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일반적인 합의에 기초해 국제적인 인권선언들이 마련되었다. 국제연합(UN) 헌장에서는 "인종·성·언어·종교에 상관없이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1948년 국제연합총회에서는 "세계 인권선언"을 의결하고 이러한 인권보호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특히 1980년대에는 각국의 사법기관에서 국제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국제사면위원회(1961년에 설립)와 같은 민간 조직이 등장했으며, 민간 조직에서는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 사례들을 수집해 자료집을 발간하

16) 인권개념의 변화에 대해서는 박구용, 인권과 복지의 경계와 상호 제약적 해명, 동서철학연구 제 64호, 2012.; 샌드라 프레드먼(조효제 옮김), 인권의 대전환, 교양인, 2009.; 박경서, 인권이란 무엇인가, 미래지식, 2012.; 이상안, 인권과 질서, 대명출판사, 2005.; 김수원, 경찰활동과 인권, 한국학술정보, 2007.; 김수원,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인권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참조.

는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1세기 인권은 더욱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며, 대규모의 조직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정의(正義)의 개념 변화와 함께 삶의 질 향상과 인간적으로 살 권리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인 분야에서 정의되어 인권의 의미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국제 인권규약을 비준한 1990년 전후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우리나라의 사회운동은 민주화운동에서 분화되어 국제연대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를 계기로 연대활동 능력의 성장을 보였다.¹⁷⁾

인권운동 단체들은 인권침해 문제를 국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 국가의 공통 관심사로 국제사회에 제기하였다.¹⁸⁾ 이후 어린이, 여성, 근로, 경제, 언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지속되었고, 그 결과 200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지난 세월 동안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현재는 형사사법기관에서도 인권센터를 개설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 노력과 함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 경찰장구의 의의

가. 경찰장구의 개념

경찰장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의하면 경찰관이 직무수행

17) 김성재 외, 인권시대를 향하여, 나남출판, 2002, 60쪽.

18) 대표적인 예가 일본군 위안부의 인권침해 문제이며, 장기수 문제와 고문 피해자 문제 등도 대두되었다.

중 사용할 수 있는 장치와 기구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2에서 경찰장구란 경찰장비 가운데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령에 의하면 경찰장구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필요최소한도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사용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찰장구가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찰장비 중 경찰장구는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방패 및 전자방패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수갑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4조와 제5조에 그 기준을 따로 제시하였다.

동 규정 제4조에는 영장집행 시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은 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5조에는 자살이나 자해 기도자, 범인, 주취자, 정신착란자 등에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사용한 경우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장구는 영장집행이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위험방지와 범인의 제압을 위해 물리력을 수반하는 경우이므로 비례의 원칙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활동에 사용되는 경찰장구는 영장집행이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한 것으로 경찰관이 휴대하는 기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를 말하고, 확대하면 호송용 포승,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전자방패를 포함한다.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무기와는 다르다고 하겠다.

<표2-1>은 현재 우리나라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장구 중 수갑, 조끼, 전자충격기와 무기대용의 호신용경봉, 가스분사검용경봉, 신형가스분사기의 보유 현황이다. 수갑의 경우 보급대상인 경감이하 경찰관 수 대비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⁹⁾ 그리고 지구대별, 수사팀별 충분한 장구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관이 상황에 부합된 장구를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2-1 > 2013년 현재 경찰장구 보유 현황

구분	호신용조끼	수갑	전자충격기
보유량	26,955	71,517	8,190
보급대상	외근형사 1인1착 지역경찰 1인1착	경감이하 전경찰관	수사팀별2~3 지구대별 2~4
구분	호신용경봉	가스분사검용경봉	신형가스분사기
보유량	46,666	14,074	10,050
보급대상	외근형사 1인 1정 지역경찰1인 1정	수사팀별 3~4 지구대별 3~6	수사팀별 3~4 지구대별 3~6

출처 : 경찰청 내부 자료, 2013.

19) 우리나라 경찰관 현황은 2012년 기준 102,386명이고 이 가운데 경감이하 경찰관수는 100,052명이다(경찰청, 2013경찰백서, 경찰청, 314-315쪽.). 정원을 기준으로하면 수갑의 수량은 28,535개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총 수갑 수량 가운데 환순수갑과 고정수갑을 제외하면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수갑은 63,044개로 40% 정도의 추가 수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수갑은 인권침해 논란과 피의자 도주 우려에 따라 최근 알루미늄 재질에서 다시 철제로 재질 개선을 추진 중이며, 실리콘이 부착된 수갑도 시범 운영의 만족도가 높아 지속 보급할 계획이다.²⁰⁾ 경찰봉은 현재 폴리에틸렌 소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방패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특수재질로 제작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장구 가운데 치안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며, 인권논란의 핵심으로 등장한 수갑을 중심으로 경찰장구 사용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겠다.

나. 수갑의 종류와 인권보호 가능성

최근까지 경찰장구의 관리는 대략의 수량만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고, 관리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인장구로 보급되는 수량도 부족하였고, 신임 순경의 경우 보급이 충분하지 않아 자비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칙적으로 경찰장구는 경찰청에서 경찰관들에게 보급되어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에는 각 경찰서별로 관리하면서 수기로 체크되어 있었다. 체계적인 관리 부족은 노후된 수갑이나 외제 수갑이 현장에서 사용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현장에서의 수갑부족 현상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수갑재질의 개선과 더불어 전산관시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²¹⁾ 또한 인권보호차원에서 실리콘형 수갑과 손목보호대를 보급하는 방안도 시범운영을 거쳐 실시를

20) 경찰청, 수갑 재질개선 및 관리강화 추진계획, 경찰청 내부자료, 2013.08.

21) 전산시스템의 활용은 경찰 장구의 관리에도 기여할 것이지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짜 경찰장구를 사용하여 경찰을 사칭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데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경찰을 사칭하여 노점상을 갈취한 전씨는 범행 당시 경찰 근무복과 모자, 허리띠를 착용하고 경찰관이 근무할 때 소지하는 권총과 삼단봉, 무전기, 수갑 등을 몸에 지니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전씨는 위조 경찰 신분증까지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관 복장과 수갑, 무전기 등은 모두 남대문 상가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총도 남대문 상가에서 판매하는 장난감 총이었다.; 매일경제미디어 mk뉴스(<http://ews.mk.co.kr>), 2013.07.24. 뉴스원(<http://news1.kr>), 2013.07.24.).

앞두고 있다.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장구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데에는 최근 수갑 사용의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조치와 여론 질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인권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대와 경찰 스스로의 인권보호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낸 예라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수갑 현황을 살펴보면 수량 측면에서 한계는 활용 방법과 인원 대비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재질 측면에서는 휴대의 편이와 탄성 변형이 적은 견고함에서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수량 면에서 수갑은 재질에 따라 알루미늄 수갑, 철제 수갑으로 시갑 방식에 따라 고정식 수갑, 한손 수갑의 4종이 있으며, 총 71,517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55,734개가 알루미늄 수갑으로 휴대가 편리한 경량으로 제작된 특징이 있어 널리 보급되었었다. 그 외에 철제 수갑은 7,310개, 고정식 수갑은 4,959개, 한손 수갑은 3,514개로 파악되고 있다.

<표2-2> 수갑의 종류와 현황

종류	철제 수갑	알루미늄 수갑	한손 수갑	고정식 수갑
총수량 (71,517개)	7,310	55,734	3,514	4,959
비율 (100.0%)	10.2	78.0	4.9	6.9

출처 : 경찰청 내부 자료, 2013.

그러나 전체 보급된 수갑 가운데 실제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수갑이 63,044개로 파악되었고, 관리가 부족하여 개인이 구매한 수갑, 외제 수갑 등 현장 실태 파악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²²⁾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일반수갑 외에 한손 수갑과 고정식 수갑은 각 지구대별, 수사팀별

22) 경찰청, 앞의 계획서, 2013.

충분한 비치를 통해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활용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나, 부족한 상황이어서 개별적인 사례에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재질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늄 수갑은 강한 힘을 가하면 탄성변형이 일어나 열쇠가 아닌 절단기로 해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²³⁾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면 탄성변형에 의한 유격이 발생하여 톱니의 접촉면이 풀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톱니의 교정으로 탄성 변형을 보완하거나, 철제수갑을 보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알루미늄 수갑은 재질이 가벼워 휴대하기 편한 장점이 있는 반면, 이와 같은 단점을 보였다.

철제 수갑은 재질이 무거워 휴대하기 불편한 단점이 있어 알루미늄 수갑으로 대체했으나, 상대적으로 탄성변형은 적어 시갑 상태의 문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22,082개를 지방청별 배정하기로 하였다.

실리콘 수갑은 최근 수갑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는데, 일선 보급 찬성률은 79%, 만족도는 65%로 나타나 2014년도에는 지역경찰과 수사기능에 팀당 1개씩 보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얇은 재질의 손목보호대를 개발하기로 하였고, 수갑 전산등록과 함께 노후된 수갑(사용연한 경과)이나 외제 수갑을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23)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2013.11.01. : 경찰 관계자는 "열쇠에 순간적으로 힘을 잘못 가하면 생길 수 있는 일"이라며 "예비열쇠를 가진 직원이 다른 곳에 있어서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았고 그 사이 피의자 인권 침해가 우려돼 119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http://www.newsis.com>) 2013.11.11. :경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4시50분께 술에 취해 모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다 현장에서 경범죄(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체포돼 임시 조치로 동남경찰서 유치장으로 감금되기 위해 이송됐다. 그러나 경찰이 A씨를 유치장에 입감시키려고 수갑을 푸는 과정에서 수갑 열쇠가 빠지지 않아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열쇠를 가진 직원이 A씨에 대한 추가 조사 과정 등의 지시를 받기 위해 멀리 있어 인권 침해 등을 고려해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수갑의 재질 개선과 새로운 장구 도입, 충분한 장구의 보급으로 상황에 따라 경찰관이 경찰장구를 선택·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은 경찰활동에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현장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제2절 경찰권 행사에 있어서 인권보호의 법적 토대

1. 경찰장구 사용의 근거가 되는 법의 인권보호 내용

경찰장구의 사용은 경찰권 행사의 대상인 범죄자의 체포와 진압에 있어서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안전 확보에도 필요적이거나, 경찰장구 사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권한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완화된 수단을 사용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한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장구 사용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기에 장구 사용의 정당성이 필요하며, 기본권 침해할 수만하는 경찰장구 사용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적 근거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장구 사용의 근거가 되며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법에 대한 고찰과 그 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인권보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경찰장구 사용의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장구사용에 있어서 인권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규정 하에 경찰장비와 경찰장구의 종류와 그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각 장비별로 그 사용 범위를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사용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제1조 목적에서 “경찰관은 경찰 직권을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경찰활동

24) 백창현, 경찰장구사용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 고찰, 치안정책연구 제29호, 2006, 130-132쪽.

의 인권보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하겠다.²⁵⁾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에서는 “인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특히 10조의 2에서는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한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1)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2)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작용과 인권보호의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그 내용과 적용에 있어 보다 인권친화적인 영역으로 변화를 모색하여 경찰 조직이 권능으로서의 기구가 아니라 공적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구로 변모할 필요성이 있다.²⁶⁾

다음으로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장비의 종류, 사용기준,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3조에서는 일반적인 장비 사용기준을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비례

25) 경찰청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해설서를 발행하여 경찰권 남용의 금지, 경찰권의 적극적 한계, 경찰권 발동의 전통적 한계인 조리 상의 한계를 논하면서 오늘날 경찰권 발동에 대한 통제는 조리 상의 한계가 아니라 명문화되어 있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헌법 원리에 의한 권한의 한계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고도 위험사회에서 보호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가 소홀해지면 개인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고, 개인 보호를 위한 위해의 방지와 제거 임무가 경찰사무로 되어 있으며, 국가기관으로부터 생명·신체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권은 헌법적 정신과 가치가 관철되도록 개인보호적 관점에서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경찰청, 경찰관직무집행법 해설서, 경찰청, 2013, 17-20쪽).

26) 이재호, 경찰활동과 인권보호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2012, 54-57쪽.

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수갑 사용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체포·구속영장 집행과 호송하거나 수용하는 경우, 제5조에서는 자살방지 등을 위한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경찰장구 사용의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하여 경찰권 발동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준수를 요청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찰의 임무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찰재량권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더욱 큰 상처와 불신을 줄 수 있어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경찰의 인권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경찰활동은 위험성과 긴급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권 행사에 있어서 자칫하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활동이다. 따라서 그 만큼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에 앞서 인권의식이 경찰권 발동 기저에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경찰관이 현장의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활한 보호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변화가 요청되며,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인권의식에 대한 규정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1조 제2항에서도 긴급체포 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 경력, 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 태양,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인권보호에 대해 명문화하고 있으며, 수사 각 단계별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내포하고 있다.

경찰관이 체포·구속 시 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법집행을 위한 행위이기

도 하지만 피의자의 건강,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제95조 제4항에서 경찰관은 피의자가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이 그러한 예이다.

여기서 한 가지 장구 사용과 인권보호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규칙이 있다. 최근 경찰청 훈령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을 개정하면서 제10조에 규정된 장구사용보고서의 의무적인 작성을 근무일지 기재로 변경한 바 있다. 다만 인권침해 우려가 크고 신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무기 대체 장비로 활용도가 높은 전자충격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용보고서 의무 작성을 그대로 두었다.²⁷⁾

근무일지에 장구사용 여부와 장구사용 경위를 기재하는 내용에 대해 시민단체나 인권단체에서는 인권보호에 역행하는 개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²⁸⁾ 그러나 현장에서 장구사용보고서는 이미 사용되지 않은 지 오래 되었고, 현장 경찰관이 보다 원활하게 치안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근무일지에 작성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하겠다.

현장 경찰관들은 장구사용보고서의 역할은 근무일지 기록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근무일지에 기록한다고 해서 경찰관이 장구사용 보고를 누락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인권침해 논란에 직면했을 때 경찰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내용을 분명히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27)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개정 전 : 제10조(장구사용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의 서식에 의한 경찰관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나 지휘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10조(장구사용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한 때에는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 중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전자충격기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나 상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8) 언론에서는 2013년 11월 11일자 보도를 통해 일제히 인권침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2. 경찰의 인권보호 관련 법령의 내용

가. 인권보호 관련 규정

경찰청에서는 2008년 처음으로 「인권보호 관련 규칙」을 제정하였고, 2012년 이를 폐지하고 현재의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이 규칙은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 구제업무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인권과 관련된 규정을 찾아보니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기관에 총 77개의 규칙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⁹⁾ 여기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를 제외하고 형사사법시스템 관련 규칙만을 찾아보면 법무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인권보호수사준칙,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급·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이 있으며, (해양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이 경찰청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으나 경찰청의 규칙과 비교해서 상세히 제정되어 있지는 않다.

직접적인 인권보호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급·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

29)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13.12.10. 검색

권보호 준칙, (해양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이 있었고, 수사와 관련된 규정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인권보호수사준칙이, 기타 인권보호 관련 규정은 인권보호 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이 있었다.

해당 업무가 국가공권력에 의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에서는 특히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역사가 이제 겨우 10년 내외로 해당 조직에 널리 알려지거나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는바 아직까지 인권보호 규정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제1장에서 목적과 개념의 정의, 제2장에서 기본원칙, 제3장에서 인권보호기구, 제4장에서 수사관련 조사와 보호 방법과 언론 홍보, 제5장에서 집회시위 시 인권보호 제6장에서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처리, 제7장에서 규정위반에 대한 조치 및 평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규칙은 인권의 개념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인권침해, 사회적 약자, 성적 소수자, 범죄피해자, 조사담당자, 진정인, 피진정인, 내부인권침해를 그 내용으로 하여 인권보호 대상을 사회적 약자와 소외자뿐만 아니라 내부자 상호간 인권침해까지 아우르고 있다. 이는 유사한 업무환경의 해양경찰청의 규칙보다 일보 앞서 있는 내용이다.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에서는 범죄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해 생명·신체의 안전과 비밀을 보호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언행이나 대응에 주의하고,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금지하며, 점건교통권

을 보장하여 기본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사 절차상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우려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 특성과 신뢰관계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특히 제11조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경찰장구 사용과 인권보호에 있어서 근거가 되어주고 있다.

이 규칙에서 주목할 부분은 제3장의 인권 보호 기구에 대한 내용이다. 그 내용은 경찰 직무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전문가인 외부의 도움을 받아 경찰청과 지방청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의 인권보호를 통일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감사관에 인권보호 담당관을, 지방청과 경찰서에는 인권보호관을 두는 것이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15인을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 정기적으로 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인권과 관련된 경찰제도와 정책 등에 자문과 개선권고를 하며,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및 시정권고가 가능하고, 경찰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여 경찰에 대한 민원 진정 사건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방청 인권위원회의 경우 시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경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하며, 모니터 요원도 둘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기구는 경찰의 인권정책에 대해 자신과 주민의 의견 제시, 인권침해 사례 통보, 유치장 인권보호 실태 확인, 집회시위 과정의 모니터링, 사회적 약자 요청 시 수사과정 참여, 인권교육 강의 등을 임무로 하고 있다.

위원회 제도는 경찰 스스로 민간과의 협조를 통해 내부 인권보호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형식적인 회의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규정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상당부분 인권의식 제고와 인권경찰로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구 사용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제4장 수사의 제54조에 무기 등 사용의 한계를 규정한데 있다. 제1항에서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무기, 경찰장구 및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특히 도주하는 상대방의 등 뒤에서는 가급적 위해를 가하는 무기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제2항은 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실적인 도주 가능성,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하여 장구 사용에 있어서 현실성과 상황 파악을 경찰의 재량에 두지만 사용 자체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필요최소한이라는 장구 사용의 한계 내용과 같다. 즉 이 기준은 인권보호를 위해서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상당히 세밀하게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각 위원회의 활동과 인권보호담당관의 역할까지 상황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어 규칙에 따라 인권보호 업무가 수행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규칙은 지난 2012년에 인권보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에 있던 규칙을 폐지하고 제정한 것으로 자리를 잡고 제 몫을 해내려면 부단한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제3절 선행연구와 외국의 관련 사례

1. 경찰 장구 사용과 인권보호에 관한 선행연구

경찰활동에서 인권 패러다임을 도입한 경우는 2004년 박사학위논문이 시초로 나타나고, 2006년 경찰학계의 학술대회에서는 경찰의 인권보호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후 현재까지 연구된 경찰장구 사용과 인권보호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수사 절차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에 관한 것이었다.

2004년에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에 인권이라는 패러다임을 접목한 시도를 한 바 있으나, 지역사회 시민이 경찰에 바라는 치안 방향성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어 시민의 치안 만족도에 가까운 양상을 보였다. 다만 인권이라는 측면을 연구에 도입한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³⁰⁾ 2006년에는 학계에서 인권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경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과거 인권의 사각지대로 여겨진 정보(안보)담당부서의 인권보호 역할, 시민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생활안전(지역경찰)의 경우 적극적인 인권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연구가 주된 내용이였다.³¹⁾

인권이라는 패러다임을 명확하게 연구한 논문은 최규범(2007)의 연구였는데, 인권경찰의 나아갈 바와 인권침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지향적인 경찰상을 제시한 의미 있는 연구로 경찰관의 윤리성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경찰활동 방향성을 보여주었다.³²⁾ 이후 우리나라 경찰

30) 김수원, 앞의 논문, 2004.

31) 김창윤, 경찰안보기관의 역할과 인권, 한국경찰학회보 12호, 2006.; 조현빈, 외근경찰의 적극적 인권보호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2호, 2006.

32) 최규범, 미래한국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 : 인간지향경찰활동(HOPE), 경찰학연구 제7권 제3호, 2007.

의 인권정책의 변화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논문과 법학적 측면에서 경찰활동과 인권보호의 상관성에 대해 논의한 이론적 연구도 발표되었다.³³⁾

경찰수사 단계에서 인권에 대한 연구는 외국의 인권보호 사례 소개와 비교연구가 시초였으며,³⁴⁾ 장애인 범죄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방안 연구,³⁵⁾ 수사절차에서 권한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연구³⁶⁾가 경찰활동과 인권에 관한 다수의 연구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경찰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와 인권담당부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³⁷⁾ 경찰장구 사용과 관련된 논문은 테이저건과 관련하여 수사경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총기사용과 인권보호 실태연구, 장구사용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고찰 연구가 있었다.³⁸⁾

경찰장구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부족한 실정이고, 인권에 대한 철학과 구체적인 의식이 아직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는 시작단계이며,

33) 김재주, 경찰의 인권정책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경찰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연구 제4권 제1호, 2011.; 이재호, 앞의 논문, 2012.

34) 김길배, 범죄피해자와 증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미국경찰의 시책, 경찰학연구 제9권, 2005.; 표창원,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장치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6권 제3호, 2007.

35) 강영실, 장애인범죄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고찰, 교정복지연구 제16권, 2009.; 조규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제4권 제1호, 2011.; 신주호, 경찰수사절차상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1권 2호, 2010.

36) 김문호, 경찰의 체포권 남용방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40권, 2010.; 박동균·김우준, 피의자 인권을 고려한 경찰서 유치장의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제11권 3호, 2012.; 김상운, 수사 경찰의 인권보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제4호, 2012.; 도중진, 경찰수사 절차에 있어서 인권보호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적 개선방안 : 피내사자와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과학수사학 제7권 제2호, 2013.; 이상훈,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2012.; 황문규·박형식, 경찰의 고문수사에 의한 인권침해와 근절방안, 경찰학논총 제7권 제2호, 2012.

37) 김재민, 경찰관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1호, 2013.; 강희창·김주찬,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의 범죄피해자 지원 및 제도 현황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2호, 2012.; 임창호, 앞의 논문, 2013.

38) 변지희·김상운, 경찰의 테이저 사용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 수사경찰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0권 제1호, 2013.; 박용규, 경찰의 총기 장구 사용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한 실태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4권 제2호, 2007.; 백창현, 앞의 논문, 2007.

수사단계에서 이미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물리력 사용에 대한 인권보호 연구가 대다수였다. 아직은 경찰활동과 인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로 직접적인 장구 사용과 인권을 연계한 연구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

2. 외국 경찰의 수갑 사용 방법

우리나라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찰장구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경찰관의 재량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은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소극적으로 범집행을 하게 되어 경찰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때로는 재량권 남용에 의해 인권침해 진정 사례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³⁹⁾ 경찰관의 인권과 시민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신중히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겠다.

가. 미국 경찰의 수갑 사용

미국경찰은 기초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도를 지닌 나라로서 경찰운동도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정이 따로 존재한다. 동일한 규정은 아니지만 미국의 문화와 정서에 따른 유사성은 갖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대규모의 메트로폴리탄 경찰서의 경우에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LA경찰은 업무매뉴얼(LAPD Manual)과 교육훈련 자료에서 수갑 사용에 있어서 경찰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사용방법

39) 외사국, 2012-2013 해외치안자료 참조.

은 몸 뒤쪽으로 손바닥을 밖으로 향한 상태에서 시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임산부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만 앞수갑을 허용하고 있다.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수갑 사용에 대해서는 4가지 경우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다. 1) 수갑 사용(volume 4, 217.30) : 수갑 사용의 주목적이 피체포자 통제와 상황 악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있으며, 강력범에 대해서는 수갑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도주가능성, 상황악화 가능성, 잠재적 위험성, 피체포자의 전력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경찰관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2) 경미한 수감자에 대한 수갑 사용(volume 4, 217.32) : 경범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요인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경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나 예외의 경우도 있다. 3) 공격적인 피체포자에 대한 수갑 사용(volume 4, 217.34) : 피체포자가 공격적으로 변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체포자의 손을 뒷수갑으로 시갑한다. 4) 정신병환자에 대한 수갑 사용(volume 4, 217.36.) : 구속복 또는 제압끈으로 제압이 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도 있다.

교육훈련 자료의 내용도 매뉴얼과 다르지 않으나, 수갑 등 통제 장구 사용은 상식과 건전한 판단에 근거하고, 수갑은 몸 뒤쪽에서 손바닥 또는 손등을 모은 채 시갑하되 가능한 상해 방지를 위해 이중 잠금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신질환자 또는 폭력적인 피체포자를 제외한 상황에서 플라스틱 수갑을 인정하고 있다.

LA경찰 역시 우리나라 경찰과 마찬가지로 장시간 수갑사용, 부적절한 수갑 사용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는 등 피체포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⁴⁰⁾ 수갑이 범인을 제압하는 장구의 하나로 체포자인 경찰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경찰작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수갑 사용 시 피체포자의 인권과 경찰의 안전 즉, 경찰의 인권도

40) 수갑사용 적정성에 대한 기준은 Graham V. Conner 판례에 따르면 1) 범죄의 중합정도 2) 용의자가 긴박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 여부, 3) 용의자가 도주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지 여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주요 고려사항이 되는 것이다.

뉴욕경찰의 경우 NYPD 업무 매뉴얼인 “PATROL GUIDE”에 수갑 사용의 근거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뒷수갑을 규정에 두고 있으며, 앞수갑은 예외적으로 상사의 허가를 득하고 나서 가능하다. 그 밖에 경찰 장구로 케이블 타이, 포승, 족쇄의 사용은 업무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케이블 타이는 시위상황에서 다수를 연행할 때 예외적으로 사용되며, 정신이상자를 제압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포승과 족쇄가 사용되고 있다.

워싱턴D.C.경찰의 경우 수갑사용에 대해서는 DISTRICT OF COLUMBIA OFFICIAL CODE 5-311조에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과 피체포자의 안전을 위하여 1) 오로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2) 합리적으로 필요한 방법을 사용, 3) 팔목과 발목을 연결하는 사용방법 금지, 4)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포지션을 강제하는 방법 금지의 조건하에서 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다름없이 수갑 사용 시 피체포자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체포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은 사회적 인식의 하나로 우리의 경찰활동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삼을 만하다. 또한 체포 상황을 단계별로 나누고 재량권 발동의 일정 틀을 제공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데 미국의 경우도 그 사용 방법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므로, 치안 현장에서 인권침해와 물리력 사용의 기준이 명확할 수 있도록 장구 사용 기준에서 경범죄와 현행범인을 구분하고, 물리력 동반 여부에 따라 단계를 나누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나. 영국경찰의 수갑 사용

영국 경찰의 수갑 사용 근거는 형법 제3조 제1항, 경찰과 형사증거법 117조, 보통법의 공공질서침해와 자기방어, 형사절차와 이민법 제 76조에 두고 있다. 자세한 수갑사용 방법은 경찰지휘관협회에서 작성하여 전국 경찰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인 수갑사용가이드(ACPO GUIDANCE ON THE USE OF HANDCUFFS)와 각 지역경찰청에서 실행하는 지침을 따른다.

수갑 사용 지침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먼저 수갑 사용 조건은 1) 대상자가 도주 또는 도주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판단되고,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경찰관이나 시민을 상대로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언행에서 나타날 때이다. 두 가지 상황에서 도주나 폭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다. 2) 폭력을 이미 행사했을 때와 대상자의 폭력행위 습성을 알고 있을 때는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갑 사용은 대상자의 연령, 성별, 체격, 힘의 세기, 주변 환경 등을 대상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악화될 경우 수갑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하고 있다.

수갑 이외에 발족쇄의 경우 적정한 훈련을 이수한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고, 폭력이나 폭력 위협 시 사용하며, 적법성과 인권을 고려하여 경찰관 개인의 책임 하에 사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테이저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장비 사용이 정당화 될 수 있을 정도의 폭력이나 폭력 위협에 직면한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사용 경고를 해야 하며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 경찰관 개개인의 책임 하에 사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미국과 다르게 수갑 사용의 조건이나 대상을 범죄의 종류

로 구분하지 않고 현장 상황의 위험성 정도에 그 판단 기준을 두고 있으며, 경찰관 개인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수갑을 채우는 방법에 있어서도 앞수갑, 뒷수갑을 구분하지 않고 대상자가 온순한 경우 앞수갑을, 저항이 있거나 완력인 센 경우 뒷수갑을 채우거나 나아가 발족쇄도 활용할 수 있다.

다. 일본 경찰의 수갑 사용

일본은 경찰제도가 광역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도 되어 있어 도도부현의 규정을 따를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인 규칙은 경찰청 즉, 국가공안위원회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수갑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따로 규정이 없어 앞수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경찰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에 수갑의 사용과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죄수사규범(국가공안위원회 규칙 제2호) 제127조에 수갑의 사용에 대해 정하고 있다. 제1항은 체포한 피의자가 도주·폭행·자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언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때에는 확실하게 수갑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 가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민의 눈에 띄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도도부현의 지침에 따라 앞수갑이나 뒷수갑은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도주나 자살, 폭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의자에게 사용되는 것이라면 뒷수갑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이겠으나, 일본의 정서가 뒷수갑이 죽음보다 더 큰 수치로 여겨지는 것이라 제2항의 규칙에 가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민의 눈에 띄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

우 앞수갑을 원칙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와 많은 유사성을 보이는 듯하지만,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수갑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우리에게 비해 많이 부족하고, 정서상의 문제나 인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우리 경찰의 그것과 사뭇 다른 성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프랑스 경찰의 수갑 사용

프랑스에서는 경찰 장구 사용의 법적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803조를 들 수 있다. 제1항에서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수갑 또는 족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수갑 또는 족쇄를 채운 경우 사진촬영 또는 영상녹화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는 안전의 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수갑 또는 족쇄에 외에 다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인권 선진국이라 불리는 프랑스는 형사소송법에 이와 같이 장구의 사용에 있어서 자유의 억압이 과하지 못하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갑 사용 방법은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은 없으나 오랫동안 행해진 관행대로 경찰활동 매뉴얼 상 뒷수갑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갑 사용 관련 지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80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출 것, 대상자의 나이, 건강상태, 성격, 음주 또는 마약복용 유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별력 있게 사용할 것, 수갑 사용으로 인해 해당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 금지, 13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는 절대 사용 금지(단, 13~18세의 미성년자가 중죄를 범한 경우나 검사 지휘 시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감독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수갑 사용 남용과 위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수갑 사용 남용

이나 위반으로 외부기관에 적발된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는 등 더욱 상세한 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중앙집권적인 경찰제도 안에서도 국가와 시민이 인권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나라로서, 경찰관이 충분히 여러 상황과 요건을 고려하여 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두어 재량권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상세한 수갑 사용 요건의 나열은 경찰관과 해당자 서로에게 수갑 사용의 적정성을 알게 해주고, 인권침해 논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외국의 인권보호 사례

우리나라 경찰이 인권센터를 개설하고 경찰과 시민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영화제를 개최하며, 다양한 소통의 창구를 확보하고 홍보 활동을 진행하면서 소수인권, 인종차별, 다문화에 대한 포용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 다름 아니다. 오히려 디테일한 부분까지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권보호에 대한 노력은 세계적으로 비슷한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체포자와 피체포자의 안전과 인권에 대해 동시에 고려하고 있고,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시민들이 수궁하고 있지만 재량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빈번하다.

이에 대해 LA경찰은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있어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민에게 공개하여 눈에 보이는 자기 통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각종 유형력 사용 사례에 대해 세분화된 분석을 실시하고, 경찰관 계급별·피해자 성별·인종별·경찰관이나 피의자의 상해 수반 여부 등에 대해 통계 관리와 분석을 실시하여 경찰관의 유형력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다. 이는 경찰활동의 투

명성을 제고하면서 내부문화를 개선하고, 인권보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에서는 주 인권위원회와 경찰이 공동으로 경찰 내부문화를 진단하고, 편견 해소와 조직 내 불평등 구조개선 등 내부 인권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소수집단 대변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업무에 인권 원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조직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명확한 인권 규칙 제정, 인권 시각에서 규범과 절차 재검토, 인권보호 실천 장애 요인에 관한 연구 실시, 인권보호 노력의 대내외적 홍보, 민원처리 절차에 인권 요소 반영 등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내부 고객인 경찰관과 외부 고객인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유도하게 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권 관련 대응 시스템과 절차를 확립하여 조직 변화를 유도하는데 핵심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를 주도하는 기관장의 역할이 중시된 바 있다.

일본에서는 국가공안위원회의 「피의자 조사 적정화를 위한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사업무에 있어서 인권침해 요소들을 배제하게 하고 이에 대해 경찰기관장이 조사 순찰관이 되어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또 피해자도 가해자도 나오지 않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중고생, 대학생, 지역 주민을 각각 대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운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여 삶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 민간단체·교육위원회·학교까지 참여하여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이러한 활동은 인권의식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키는 내용은 아니었으나, 각 프로그램에 내재되어 있는 인권보호의식은 여러 계층, 여러 단체에 파급시킬 수 있는 효과는 거두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인권보호 활동으로 특별하게 찬사를 받은 사례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지만, 꾸준한 지역경찰활동으로 인해 시민이 경찰의 활동에 대해 지지를 보내게 되고, 경찰활동 홍보를 통해 시민과 연결되고, 절차적 하자를 개선해가는 모든 노력은 결국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들은 경찰이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면서 경찰활동을 하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제3장 장구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현황과 인권의식 분석

이 장에서는 먼저 경찰장구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그룹의 의견 취합을 위한 델파이 분석으로 고찰해본다. 이렇게 나타난 제 요소에 대해 인권업무 담당자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검증하고, 델파이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한 후 이에 대한 인권의식 제고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림3-1> 연구의 흐름도



제1절 경찰장구 사용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분석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례 분석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권고 현황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6,188건으로 이 가운데 권고 건수는 319건으로 5.2% 비율로 나타났다. 2009년 1,203건, 2010년 1,594건이었던 진정건수는 2011년 이후 400여건 이상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진정건수 대비 권고의 비율도 2009년 128건으로 10.6%의 비율이 2010년 이후로 4.0%대의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⁴¹⁾

<표3-1> 최근 5년간 인권침해 진정·권고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10	계
진정 건수	1,203	1,594	1,118	1,220	1,053	6,188
권고 건수	128	63	46	52	30	319
비율(%)	10.6	4.0	4.1	4.3	2.8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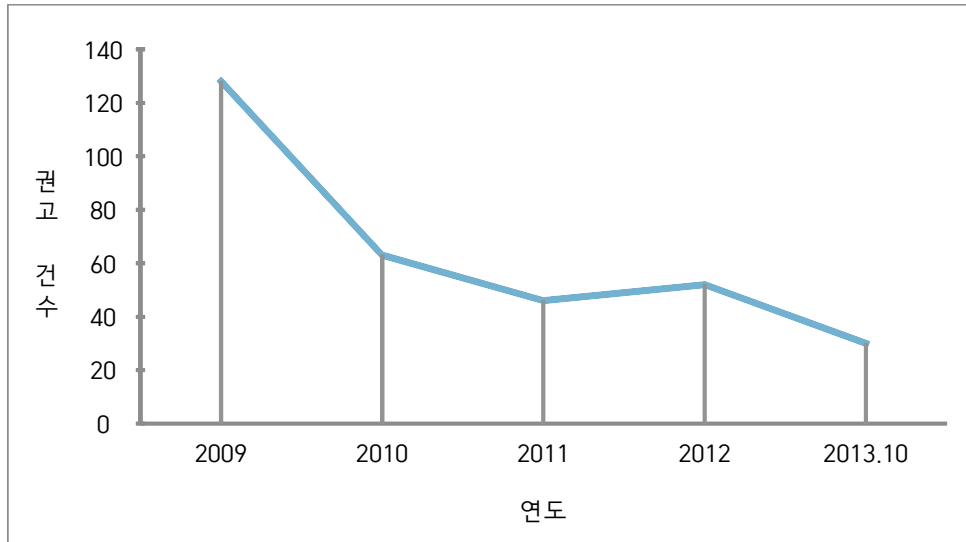
출처 : 경찰청 내부 자료, 2013.

2010년 권고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2011년에는 진정 건수 자체가 급감했는데, 이는 경찰활동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무분별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률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진정 건수 자체가 줄어들기도 하였고, 권고 결정을 받을 만한 사안이 확연히 줄어

41) 2013년 전체 진정건수와 권고건수는 보고서 작성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발표된 경찰청의 10월 31일 집계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된다. 2013년 연말에도 권고 건수와 진정 건수는 이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치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3-1> 최근 5년간 인권침해 권고 건수의 변화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권고 건수의 감소는 최근 경찰청 인권센터의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용과 시민 홍보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 전국 양성평등 메신저제도 도입, 인권아카데미 개최, 지방 순회 간담회를 통한 교육, 실무자를 위한 인권심화 교육 실시 등 새로운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례들을 보면, 경찰의 인권의식 제고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경찰청에서는 권고조치에 대해 <표3-2>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 지난 5년간 권고에 대하여 일부수용을 포함하여 93.2%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수용한 경우는 3.4%에 그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경찰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이 결정은 경찰활동의 변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3-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경찰청 조치 내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10.	계	비율(%)
권고	128	63	46	52	30	319	100.0
수용	68	61	40	28	19	216	67.7
일부수용	56	-	4	20	1	81	25.5
불수용	4	2	2	3	-	11	3.4
검토 중				1	10	11	3.4

출처 : 경찰청 내부 자료, 2013.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 조치를 함에 있어서 진정 사건의 일부만 수용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경찰에서도 권고를 수용하는 자세를 기본으로 하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한도까지 노력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해를 넘겨서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나. 권고유형별 분석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권고 유형을 분석해보면 2012년 전체 진정 건수 가운데 경찰력과잉행사가 26.2%를 차지하고 있고, 이 경우 경찰장구사용에 대한 부분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 공권력 행사 부분이므로 신중한 판단과 인권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며, 국민 신뢰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때문에 그 유형이 감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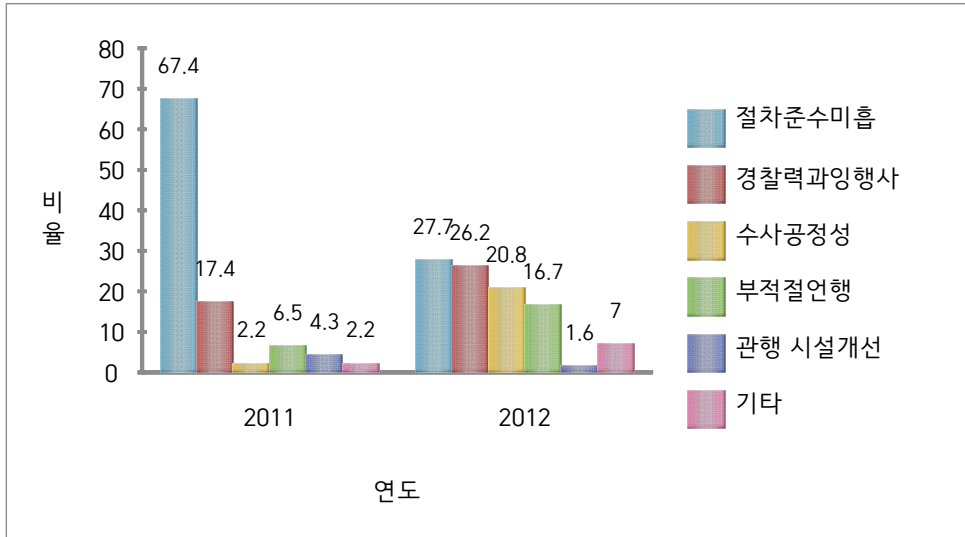
2011년에는 절차준수미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2년에는 절차준수미흡, 경찰력과잉행사, 수사공정성문제 등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특정 유형이 아니라 경찰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표3-3> 권고유형별 건수

구분	절차준수 미흡	경찰력 과잉행사	수사 공정성	부적절 언행	관행 시설개선	기타	계
2011	31 (67.4)	8 (17.4)	1 (2.2)	3 (6.5)	2 (4.3)	1 (2.2)	46 (100.0)
2012	14 (27.7)	13 (26.2)	11 (20.8)	9 (16.7)	1 (1.6)	4 (7.0)	52 (100.0)

출처 : 경찰청 내부 자료, 2013.

<그림3-2> 권고유형별 분포



그러나 2013년 1월의 최근 통계에서는 진정 84건 가운데 경찰력과잉행사가 20.3%를 차지하고 있어 2012년 전체 진정 건수 비율에 비해서는 줄어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경찰력과잉행사 항목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다.

2. 수갑 사용 권고 사례 중점 분석

가. 국가인권위원회 장구 사용 유형 권고 현황

권고 유형 중 경찰력 과잉행사 가운데 장구와 관련된 사례만 조사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3년 12월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상 결정례를 조사하였다. 결정례는 세 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침해, 차별, 법령정책이 그것이다. 차별과 법령정책과 관련된 유형은 비교적 그 수치가 적고 장구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서 조사의 방법은 경찰의 침해 건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3-4〉 사례분석을 통한 장구사용 인권침해 사례 건수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인권침해 결정례 총 건수	49	58	18	10	13	148
장구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인정건수	4	11	6	1	1	23
총 사례 중 장구사용 인권침해 비율(%)	8.2	19.0	33.3	10.0	7.7	15.5

경찰의 인권침해사태에 대한 권고 결정을 조사한 결과 2009년에는 49건, 2010년에는 58건이었던 사례가 2011년부터는 최근 3년간 평균 13건 정도로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장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인정 건수는 2009년 4건, 2010년 11건, 2011년 6건, 2012년 1건으로 감소하여 현재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율적인 측면에서도 2011년 이후 인권침해 권고 결정과 장구 사용과

관련된 권고 결정 모두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3년 현재까지 장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례의 비율은 7.7%로 1건이 집계되어 매우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⁴²⁾

나.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분석

보다 자세한 사례를 통한 경찰장구 사용의 인권침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례 148건 가운데 직접적인 장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 23건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사례에서 여러 가지 중복된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장구 사용 부분만 한정하여 기록하였다.

23가지 사례는 유형과 정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장구를 사용할 상황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수갑을 사용한 경우, 수갑을 찬 모습을 외부인에게 보이지 않을 인격권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과도하게 장구를 사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화장실 사용 시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사례 포함), 장구사용이 폭행까지 이어진 경우로 나눌 수 있다.

42)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고 현황은 경찰청 최종 통계자료인 10월 31일 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는 12월까지 검색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이 통계는 사건의 발생일 기준이 아니고 결정일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다. 이 사례는 연구자가 결정례를 기준으로 재정리하였으므로 일부 누락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표3-5〉 최근 5년간 경찰장구 사용 관련 인권침해 결정 사례

번호	결정일	인권침해 내용	권고내용
1	2009.06.23. 09진인1146	진정인을 긴급체포하여 호송하던 중 도주 우려나 자해, 가해의 위험이 없음에도 진술을 번복한다는 이유로 수갑 사용	주의조치
2	2009.07.17. 09진인532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후 지구대 내에서도 수갑이 필요할 정도의 행태를 보인 것은 인정하나, 뒷수갑 상태로 소변을 보도록 하여 바지를 적시고 지퍼를 한동안 올리지 못하게 하여 모욕감을 줌	경고조치
3	2009.12.28. 09진인3763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유치장에 유치된 진정인이 난동을 부리자 장시간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여 온 몸을 제압하고, 부적절한 다리를 묶는 방법사용, 과도한 유행력의 행사로 판단	장구사용 인권교육
4	2009.12.28. 09진인3406	은행거래내역 확인을 위해 진정인과 동행하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어 수갑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건 등으로 가려주지 않아 은행직원과 시민들에게 얼굴과 수갑 찬 모습이 공개되어 기본권 침해	계고조치
5	2010.05.10. 10진정137600	진정인의 도주·폭행·자해의 위험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수갑을 사용	장구사용 인권교육
6	2010.05.31. 10진정0007000	진정인을 벌금미납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가해 또는 자해의 위험이 없음에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대기실 창가에 걸려있는 수갑을 진정인 한 손에 채움	장구사용 인권교육
7	2010.06.14. 09진인3847	유치장 입감 후 응급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호송과정, 치료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채운 수갑을 가리거나 풀어주지 않음	재발방지대 책수립 및 교육
8	2010.06.15. 10직인1	미약복용혐의 진정인들에게 경찰봉 등으로 구타, 수갑을 사용하여 팔을 꺾는 날개격기 등으로 고문했다는 주장에 대해 직권조사에 따라 이 사안이 인정되어 검찰에 수사의뢰	직무감찰, 인사조치, 재발방지 대책
9	2010.07.23. 09진인4158	진정인은 쌍방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일으켜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앞선 폭행에 의해 얼굴리 통증을 호소하여 경찰은 수갑을 연결하여 소파 걸이에 고정하였으나 병원진료 요청은 거절하여 의료조치 미흡 인권침해 인정	인권교육
10	2010.08.23. 10진정403500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진정인을 지구대에서 조치하면서 타인과 시비 우려가 있어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는데, 이미 구체적 위험상태가 적어져 필요 이상의 장시간 수갑 사용 인정	장구사용 인권교육
11	2010.08.23. 10진정0338900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진정인은 수갑을 찬 상태에서 화장실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바지에 소변을 본 사례로 기본권 침해로 인정	인권교육

12	2010.09.13. 10진정0336900	피의자호송의 과정에서 화장실 이용 시 수갑과 포승을 풀어주지 않아 진정인이 수치심을 느낀 사례로 기본권 침해로 인정	인권교육
13	2010.11.26. 10진정0169100	폭행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인계된 후 담배요청을 거부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소란을 피우자 철창에 양팔을 벌린 상태로 수갑을 고정하여 채우는 방식으로 사용한 경우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신체자유 침해	직무교육
14	2010.12.15. 10진정0606100	폭행과 경찰관 위해의 위협으로 유치장에 수감된 진정인의 화상 치료를 위해 병원 호송 중 수갑과 포승을 찬 모습을 가리지 않아 수치심을 준 사례	조의조치, 직무교육
15	2010.12.15. 10진정0243900	절도혐의로 긴급체포 시 호송되는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수갑을 채웠고,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해 구체적인 위협 발생의 우려가 없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하여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게 한 사례	징계조치, 진술녹화실 재점검
16	2011.01.31. 10진정777300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항거 억제를 위해 삼단봉과 가스총을 사용한 것에는 무리가 없으나 좁은 공간에서 사용한 데에는 문제가 있으며, 도주나 저항 의사 없는 진정인에게도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인권 침해/장시간 케이블타이를 사용하여 상처를 입히고, 보존조치 없이 수갑하고 화장실도 2~4명을 묶어 동시에 보내 수치심을 주었고, 17시간 동안 컵라면 한 개를 식사로 제공	징계조치, 인권교육
17	2011.05.30. 10진정0518900	도로 위에서 범행제연을 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수갑 등을 가려주지 않아 기본권 침해	기본권보호 직무교육
18	2011.06.15. 10진정0624300	사기혐의의 진정인에게 3차례 조사를 실시하면서 장시간 수갑을 채운 사례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	수갑사용 직무교육
19	2011.09.08. 10진정065770	피의자 수갑 찬 모습 외부 노출로 기본권 침해 (4건 병합)	피의자호송 직무교육
20	2011.09.08. 10진정0419800	진정인을 승합차에 태우고 조사하면서 뒷수갑을 채우고 날개꺼기를 시도하여 자백을 강요	검찰에 수사의뢰
21	2011.11.02. 11진정0398900	편의점 소란에 대해 진압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엎드린 상태의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상처	경고조치, 인권교육
22	2012.04.13. 11진정0531200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지구대에 연행된 후 지구대 내에서 뒷수갑으로 결속된 진정인의 발목 부분을 걸어차서 넘어뜨린 행위는 신체의 자유 침해	주의조치, 직무교육
23	2013.06.12. 13진정0194800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뒷수갑을 채워 체포하였고, 수갑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했으나 확인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이중 잠금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손목에 상해를 발생시켜 신체의 자유를 침해	제도개선방 안의 이행, 수갑사용 직무교육

수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경찰관 자의로 부당하게 수갑을 사용한 경우는 3건(1,5,6번)이었고, 수갑을 찬 모습을 비공개해야 함에도 조치 미흡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는 5건(4,7,14,17,19번)이었다.⁴³⁾ 과도한 수갑 등 장구 사용으로 직접적인 신체 피해나 수치심을 유발한 사례는 12건(2,3,9,10,11,12,13,15,18,21,22,23번)이었으며, 이 가운데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사건은 3건(2,11,12번)이었다. 마지막으로 수갑사용이 폭행, 고문과 연결되어 가장 인권침해가 심한 경우는 3건(8,16,20번)이었다.

1) 부당한 수갑 사용으로 기본권 침해 사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판례에서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필요최소한으로 장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⁴⁴⁾ 이 사례들은 긴급체포로 호송하던 중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진술번복을 이유로 수갑 사용, 보호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수갑 사용, 벌금미납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가해 또는 자해의 우려,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수갑을 사용하여 인권침해 결정을 받은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 절차를 준수하고, 조금만 주의했다라면 충분히 인권침해 논란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경우로 기본적인 인권의식이 요청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주의조치와 장구 사용 인권교육의 권고는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예라고 하겠다.

43) 단, 19번의 사례는 동일한 사례에 대해 병합결정을 내려 총 4건에 대한 결정례이다.

44) 피의자를 신문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수갑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조항에 따라 수갑을 사용할 경우, 도주·폭행·소요·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갑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구체적 위험의 존재를 수갑사용의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헌마49결정).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으로서 신문절차 뿐만 아니라 체포절차 등에서 장구를 사용할 때에도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넓게 준용되고 있는 판례이다.

2) 수갑을 찬 모습 비공개 조치 미흡 사례

은행거래내역 확인을 위해 동행하는 과정에서 도주 우려로, 유치장 입감 후 병원으로 호송 과정과 치료 과정에서, 도로상에서 범행 재역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갑이나 포승을 한 모습이 공공연히 사람들에게 노출되었다는 인권침해 유형이다. 이에 대해서는 계고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기본권 보호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피의자 호송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등이 권고되었다.

이 경우 절차에 따라 공공연한 장소에서 얼굴이나 수갑을 찬 모습을 가려주거나, 수갑을 해제한 상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피의자가 가리지 않아도 좋다고 동의한 경우에도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이 인권침해 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또한 외부에서 이들을 감독할 때에는 도주의 우려에 대해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긴장해야 할 것이다.

3) 과도한 수갑 등 장구 사용으로 신체 피해 사례

이 사례가 가장 많은 인권침해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없게 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경우 지구대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례로 난동의 우려로 수갑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에 갈 경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었거나, 화장실 사용을 거부하여 그 자리에서 용변을 보게 한 경우이다. 과거에는 경고조치를 하였지만 이제는 널리 인식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사례가 되었다.

이 경우 즉시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한손 수갑을 사용하거나 감시를 강화하여서라도 용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장구의 부족이나 주취자가 많은 야간 시간대의 지구대 환경을 무시할 수

없으나, 경찰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충분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과도한 장구 사용으로 인해 신체에 위해가 가해진 경우이다.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여 제압할 경우 지나치게 장시간 사용한 경우, 수갑을 찬 상태에서 고통을 호소하는데 시갑 상태를 확인하지 않거나 이중 잠금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갑을 찬 상태에서 의료조치를 요구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수치심을 느낄 만한 자세로 수갑을 사용한 경우,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한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에는 장구 사용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또 조사실에서 이루어진 장시간 수갑 사용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수갑을 찬 피의자에게 고의로 발을 걸어 넘어뜨려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는 명백히 인권침해로 볼 수 있어 해당자에게 주의조치와 직무교육 실시의 권고를 받았다.

수갑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장구로서 시갑 상태를 충실하게 확인해야 하고, 사용법이 숙련되어야 하며, 신체 상태를 잘 살펴서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체포 시 수갑을 사용하였더라도 긴급 상황이 해제되면 반드시 확인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다시 하여야 하겠다. 수갑의 상태를 조절하거나, 위험성이 없다면 장시간 사용을 중단하거나, 충분한 의료조치 등을 해야 한다. 물론 도주의 위험이나 장구해제를 위한 억지성 민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태 확인은 충분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정을 준수하여 수갑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수갑 사용과 폭행, 고문이 연결된 경우

수사 과정에서 많이 대두되는 사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까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직권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경찰봉으로 구타를 당하고 수갑으로 날개끼기 고문을 행했다는 사안으로 22명의 진정한 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진정한 사례로 직무감찰과 인사조치, 재발방지 대책의 권고를 받았다. 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충분한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삼단봉과 가스총을 과도하게 사용하였고, 체포 후에도 식사 제공을 소홀히 하였고, 케이블타이로 장시간 묶어두어 손목에 상처를 입히고, 화장실 사용 시 묶인 상태에서 보내 인격적 모멸감을 준 사례에는 징계조치와 인권교육 권고가 내려졌다. 마지막으로 체포과정에서 승합차에 태우고 조사하면서 뒷수갑을 채우고 자백을 강요하면서 날개끼기 고문의 사례에는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경우는 비단 수갑 사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침해와 인격적 침해를 동시에 가져오는 가장 위험한 인권침해 유형으로 다수의 피의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수사상 절차의 하자로 인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로 기본적인 인권의식의 결여와 미흡한 절차 준수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경찰활동에 있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충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최근 5년 사이 계고나 주의 조치에서 장구 사용에 대한 인권교육, 그리고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라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제는 당사자에 대한 단순한 경고나 주의조치보다는 인권교육을 통한 전 구성원의 인식의 변화와 구체적인 제도적 측면의 인권보호 방안의 필요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다. 사례분석의 결과

첫째, 장구 사용 절차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장구의 부당 사용의 경우 사용 절차 규정만 준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례들이

었다. 또 과잉 사용의 문제 역시 절차를 기본적으로 준수했다면 권한 남용 사례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업무 현장에서 기본적인 인권보호 의식이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업무량과 피의자나 신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인권보호라는 측면에 소홀해진 경우가 있었으며, 고의적으로 밧을 거는 행위의 경우 인권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면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도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셋째, 업무 현장에서 재량권의 범위에 대한 한계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량권의 부분은 양쪽 측면을 갖고 있는데,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관이 장구를 사용해야만 하는 재량을 충분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장구 사용을 할 수 있는 재량에 대해서는 경찰권 발동에 대해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량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의 기준 정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분명 법령과 관례에 따라 장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는 하지만, 똑같이 인권교육 권고를 내리는 사례에도 그 경중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다. 경중에 차이가 있어도 기본적인 인권의식에 대한 교육권고의 취지는 같을 수 있으나, 사건을 종합하여 분석할 때 전체 기각을 내려도 될 만한 사건에도 일부 부분에 대해 교육이 필요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권고 건수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제2절 인권의식과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델파이 조사

공정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21세기 우리나라 경찰은 인권수호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경찰활동에 있어 인권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로 성공적인 경찰활동 여부를 평가하는데 인권은 중요한 요소이다.⁴⁵⁾

따라서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서 인권침해 논란에 대응하는 방법 중 장구와 절차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인권에 대한 기본의식의 향상과 경찰의 다양한 대응방안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경찰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도출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⁴⁶⁾

1. 전문가 그룹 선정과 1차 분석 결과

가. 전문가 그룹의 선정과 문항의 구성

1차 전문가 델파이 분석은 학계 전문가 3명, 현장실무자 중 관리자 2명, 인권업무 담당자 3명, 관련 전공자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 가운데 7명이 응답하여 70%의 응답률을 보였다. 1차 질문지에서 도출된 결과로 객관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2차 전문가 델파이 분석에 활용하였다. 2차 분석에서는 좀 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전공자 2명을 추가하여 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9명에게 결과를 받아 응답률은 75%였다.

45) 임창호, 앞의 논문, 2013, 104쪽.

46)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경험적 지식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제 해결 및 미래 예측 등에 사용하는 연구 기법의 하나이다.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윤경희·박동균,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향 연구-델파이 방법을 활용하여-,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2012.; 김영옥, 뉴스미디어의 미래-델파이 조사와 시나리오 기법을 통한 탐색,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박치동, 델파이와 AHP기법을 활용한 이러닝 기반 교원연수 프로그램 평가 모형 개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1차 질문지는 개방형 질문으로 인권의식, 장구 사용, 인권보호 노력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총 15문항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3-6> 델파이 제1차 질문지 구성

영역	내용	문항	형식	결과분석
인권의식	- 우리사회의 인권의식 수준 정도 - 경찰관의 인권의식 수준 - 경찰의 인권보호 책임성 정도 - 관련 법령의 인지도	4	서술형	질적 분석을 통한 2차 설문지 작성
장구사용	- 장구사용에 있어서 우선순위 - 효율적인 장구의 개발 - 매뉴얼의 활용과 개선 - 장구 사용 교육	4		
인권보호 노력	-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 내부 진정에 대한 상담 - 인권센터와 민원센터의 활용 - 현장 경찰관에 대한 인권교육 방안 -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성 - 인권보호 노력에 대한 성과평가 반영	5		
기타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대한 태도 - 최근 장구사용 규정 개정에 대한 인식	2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대분류는 인식, 절차, 교육 3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 각 영역별로 인권과 장구 사용에 대한 질문 문항이 구성되었다. 인권인식은 3문항, 인권절차는 5문항, 인권교육은 6문항으로, 장구 사용 인식 3문항, 장구 사용 절차 4문항, 장구 사용 교육 3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질문지는 총 2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나, 구체적인 응답을 위하여 중복성이 있는 질문 문항의 경우는 하나로 묶어 15개로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수갑사용 매뉴얼에 대해서는 활용 정도, 포함되어야 할 내용, 경찰관의 준수 정도는 하나의 항목으로 처리한 것이 그것이다.

1차 분석을 위한 이 질문지는 2명의 전문가에게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 후 완성하였다. 추상적인 인권에 대한 연구 내용이므로 자칫 추상적인 답변에 그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질문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과 장구사용 부분에 대한 문항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하여 완성되었다.

나. 1차 개방형 질문지 응답결과 분석

15개 항목의 질문지에 전문가의 응답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먼저 인권의식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경찰의 인권의식의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우리사회의 인권의식 수준도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업무적 측면이나 경찰 내부적 문화요인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비인격적인 사람들을 대하다보면 때로 인권의식이 희박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경찰권 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무조건적인 인권침해나 억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경찰과 시민의 태도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경찰권 발동이 엄격한 법집행으로서 질서유지에 기여하리라 생각하며 지지하지만, 현장에서 자신이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되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찰의 인권보호 책임은 대부분의 경우 경찰활동 전반에서 나타나야 하며, 적법절차 준수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책임 치안과 봉사의 입장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인권보호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는 인권업무 담당자의 경우 알고 있으나, 현장 경찰관들이 숙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경찰활동의 근거법에 선언적 의미로 내포되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인권보호 인식은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장구 사용에 대한 견해는 장구 사용 시 가장 중시해야 하는 부분은 위험성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재량권과 판단이 중요한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즉, 장구는 본질에 맞게 사용하되,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효율적인 장구의 개발에 대해서 인권보호 담당자나 현장 실무 담당자는 불필요한 물리력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인권침해 우려가 적은 장구를 개발하고 도입하면 장구에 의한 고통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인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학계에서는 장구개발이 법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개선으로 수갑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도주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인권의식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수갑 사용 매뉴얼은 사건에 따라 다양하고 자율적인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와 사용방법, 잘못된 사례 등을 매뉴얼에 포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매뉴얼이 절차 규정은 아니므로 인권보호를 위해 자율적 재량 하에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사용된다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 장구 사용 규정 준수는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규정이 추상적이고 애매하여 일목요연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장구 사용에 대한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신입교육 때, 정기 승급 때 실시하거나, 신규임용, 3년차, 6년차 등으로 일정기간에 한 번씩은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 수사나 지역경찰에게는 주 1회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 정기적인 사격 훈련과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종합하면 정기적으로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보호 노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인권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직무교육이나 교양 등으로 대체되어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외부 강사 섭외, 참여하는 교육방식 도입, 상시학습제도에 포함, 필수적 정기 교육, 현장 중심의 법집행과의 조화를 위한 교육 방식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의식이 하루아침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학습제도를 활용하여 장구 사용 교육과 함께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경찰이나 시민의 인권의식은 높으나 이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장구 사용과 인권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나 장구 사용과 인권이라는 주제를 결합한 연구가 없어 상당히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였으며, 성과평가에 인권보호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좋으나 평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징계를 상계하는 제도로 자리잡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대학 등과 연결하여 인권의식을 함양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많지만 현재의 부족한 인력, 소규모 인권센터로는 이를 모두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 단위로 격상시키고, 지방청에도 ‘과’ 단위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장기적으로는 인권이 경찰활동의 기초 철학으로 자리 잡아 전 경찰활동에 근간이 되어야하므로 인권센터가 중요 부서로 격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2. 2차 객관형 질문지에 대한 응답결과 분석

1차 조사를 통해 나타난 공통의 의견과 기타 의견의 참신한 부분을 반영하여 2차 조사를 위한 객관형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문항 수는 인권의식 8문항, 장구 사용 10문항, 인권의식 제고 방법 7문항, 교육 프로그램 관련 13개 문항(3개 문항은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으로 총 3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 방법은 리커트(likert)형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자율 응답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표3-7> 2차 객관형 질문지의 구성

항목	문항 수	문항 내용
인권의식	8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인권의식 정도 - 경찰의 인권의식정도 - 경찰권 발동에 대한 시민 인식 - 경찰활동의 기본은 인권의식 - 경찰재량권에 대한 시민과 일치감 - 언론을 통한 경찰활동 인식도 형성 - 시민에게 경찰활동 충실한 설명 - 인권보호에 경찰과 시민 일치감
장구 사용	10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구 사용 시 경찰 인권보호의식 - 장구 사용 시 적법절차 준수 중요도 - 효율적인 장구 개발과 인권보호 - 시민의 장구 사용에 대한 인식정도 - 장구 사용 위험예방과 도주방지 중요도 - 언론의 장구 사용 인권침해우려 영향 - 장구 사용 시 매뉴얼의 필요성 - 장구 사용 시 재량권의 보장 - 장구 사용에 대한 규정의 준수 정도 - 장구 사용 규정 준수와 인권보호와의관계
인권의식 제고방법	7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보호에 대한 경찰청 훈령 인지도 -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활동성 - 민원센터의 인권보호센터 활용 - 인권센터의 확대와 담당부서 설치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경찰 업무 부담 - 성과평가에 인권의식 반영의 효과성 - 경찰활동 인권의식에 경찰과 시민 공동의식

교육 프로그램	13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의 충분성 - 신입경찰교육의 인권교육 중요 - 상시학습시간에 인권교육 실시 -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권교육 필요성 -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 장구 사용 교육과 인권교육의 병행 효과성 - 교육시간은 업무시간 내 활용 - 장구 사용 교육은 실습위주로 진행 - 업무 연계성 고려 종합교육 프로그램 마련 - 주기적인 장구 사용 교육과 성과평가 반영 - 인권교육 학습 그룹의 규모(선택형) - 인권교육 학습 방법(선택형) - 인권교육 학습 횟수(선택형)
---------	------	---

2차 조사에서는 각 항목별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으로 부여하고, 평균값을 나열하여 공통된 의견을 분석하고 표준편차 값의 크기를 통해 패널간의 합의정도를 알아보았다. 각 영역별 응답자 10명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가. 인권의식 정도

인권의식에 대한 각 항목에 대한 패널의 의견은 표준편차 1.000이하로 합의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 인권의식 정도와 경찰활동에 있어서 인권의식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항목에는 대부분 그렇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찰의 인권의식 정도는 높은 편이었으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민이 언론을 통해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경찰권 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경찰재량권에 대한 시민과 경찰의 견해와 인권보호 활동에 대한 일치도는 보통수준에 못 미치고 부정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찰권 발동에 대해서 시민과 충분한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3-8〉 인권의식에 대한 인식 정도

문항 번호	항 목	2차 결과	
		평균	표준편차
1-1	우리나라의 인권의식 정도	1.89	0.782
1-2	경찰의 인권의식정도	2.33	0.707
1-3	경찰권 발동에 대한 시민 인식	3.22	0.833
1-4	경찰활동의 기본은 인권의식	1.33	0.500
1-5	경찰재량권에 대한 시민과 일치감	3.44	0.726
1-6	언론을 통한 경찰활동 인식도 형성	2.11	0.601
1-7	시민에게 경찰활동 충실한 설명	2.56	0.527
1-8	인권보호에 경찰과 시민 일치감	3.33	0.500

나. 장구 사용에 대한 인식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인식 영역에서도 대부분 표준편차가 1.000이하로 꽤 널의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민의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항목과 장구 사용 시 인권보다 위협예방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항목에서는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언론에 의해 경찰의 장구 사용에 있어서 인권침해 우려가 부각된다는 데에는 매우 높은 의견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장구 사용 시 적법절차 준수가 중요하다는 항목과 장구 사용 규정 준수가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경찰장구 개발이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항목과 장구 사용에 있어서 매뉴얼의 중요성과 경찰 재량권의 보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시민이 경찰의 적법한 장구 사용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항목과 장구 사용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권보다 위협예방과 도주방지라 항목에는 보통의 견해가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표3-9〉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인식

문항 번호	항 목	2차 결과	
		평균	표준편차
2-1	장구 사용 시 경찰 인권보호의식	2.11	0.601
2-2	장구 사용 시 적법절차 준수 중요도	1.44	0.726
2-3	효율적인 장구 개발과 인권보호	1.78	0.667
2-4	시민의 장구 사용에 대한 인식정도	2.67	1.000
2-5	장구 사용 위협예방과 도주방지 중요도	2.78	1.302
2-6	언론의 장구 사용 인권침해우려 영향	1.89	0.333
2-7	장구 사용 시 매뉴얼의 필요성	1.67	0.707
2-8	장구 사용 시 재량권의 보장	1.78	0.833
2-9	장구 사용에 대한 규정의 준수 정도	2.22	0.667
2-10	장구 사용 규정준수와 인권보호와의관계	1.67	0.500

다. 인권의식 제고 방법에 대한 견해

인권의식 제고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인권센터의 확대 설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경찰 업무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항목에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권센터의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부담이 될 것이라는 항목은 보통의 수준으로 나타나 큰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권보호에 대한 경찰청 훈령의 인지 정도와 민원센터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용, 성과평가에 인권의식 항목 반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활동의 활발성에 대해서는 보통의 의견을 보여서 다른 항목보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표3-10〉 인권의식 제고 방법에 대한 견해

문항 번호	항 목	2차 결과	
		평균	표준편차
3-1	인권보호에 대한 경찰청 훈령 인지도	1.56	0.882
3-2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활동성	2.78	0.667
3-3	민원센터의 인권보호센터 활용	1.78	0.441
3-4	인권센터의 확대와 담당부서 설치	1.89	1.054
3-5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경찰 업무 부담	2.78	1.093
3-6	성과평가에 인권의식 반영의 효과성	1.89	0.601
3-7	경찰활동 인권의식에 경찰과 시민 공동의식	1.44	0.527

라. 장구 사용과 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표준편차가 1.000이하로 의견 합의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구성할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장구 사용 교육과 인권교육의 병행, 업무시간 내 교육 실시, 실습 위주의 장구 사용 교육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권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신입교육에서 인권교육의 중요성, 상시학습에 인권 교육 반영과 주기적인 교육 실시와 성과 반영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3-11〉 장구 사용과 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

문항 번호	항 목	2차 결과	
		평균	표준편차
4-1	인권교육의 충분성	2.00	0.707
4-2	신입경찰교육의 인권교육 중요	2.11	0.928
4-3	상시학습시간에 인권교육 실시	2.11	0.601

4-4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권교육 필요성	1.89	0.782
4-5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1.67	0.707
4-6	장구 사용 교육과 인권교육의 병행 효과성	1.44	0.527
4-7	교육시간은 업무시간 내 활용	1.56	0.726
4-8	장구 사용 교육은 실습위주로 진행	1.44	0.882
4-9	업무 연계성 고려 종합교육 프로그램 마련	1.33	0.500
4-10	주기적인 장구 사용 교육과 성과평가 반영	2.22	0.972

인권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 모두 소규모 그룹 학습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학습방법은 오프라인을 통한 직접 강의를 선호하였다. 다만 학습 횟수에 대해서는 필요시 부정기적 강의와 정기적 수회 강의로 의견이 나뉘었는데, 어느 경우라도 인권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3-12> 인권교육 방법에 대한 의견

번호	항목	빈도(명)	비율(%)	계	
4-11	학습그룹의 규모	대규모 집단학습	0	0	9 (100.0)
		소규모 그룹학습	9	100.0	
		개인별 개별학습	0	0	
4-12	학습 방법	시청각 매체	1	11.1	9 (100.0)
		인터넷 강의	0	0	
		오프라인 강의	8	88.9	
4-13	학습 횟수	일회성 강의	0	0	9 (100.0)
		필요시 부정기적 강의	4	44.4	
		정기적 수회 강의	5	55.6	

3.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

델파이 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구 사용에 있어서 인권보호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절한 규정의 마련과 절차적 준수의 요청이다.

우리나라의 인권의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경찰활동에 있어서도 인권보호가 기본이 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절차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구 사용에 있어서 절차의 준수는 반드시 요청되며, 절차 준수는 인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경찰활동과 장구 사용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과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다.

시민의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과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인식은 언론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경찰활동 홍보활동의 변화와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경찰의 재량권 행사에 대해 시민과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셋째,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의 재량권을 보장하여 절차 내에서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장구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 준수이며, 이를 위해서 매뉴얼이 필요하며, 규정의 준수는 나아가 인권보호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반면 치안 현장에서 경찰에게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절차 준수와 함께 강조되는 항목이었다. 따라서 치안 현장에서 경찰에게 재량권을 충분히 부여하면서도 절차 준수라는 측면을 잊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전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민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인권상담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권센터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며, 민원센터의 인권보호센터로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특히 시민과 경찰이 함께 인권보호에 대해 논의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강조된 항목이었다. 민원센터의 활용과 시민과의 점점 확보로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경찰의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권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장구 사용 교육과 인권교육의 병행, 업무시간 내 교육 실시, 실습 위주의 장구 사용 교육이라는 다양한 측면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 방법으로는 소규모 그룹 형식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중심으로 하되 정기적인 교육과 필요시 비정기적 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 이론보다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외부 강연자 초청과 피교육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실습 체험형 교육 방식을 요청하고 있었다.

제3절 인권업무 담당자 설문 조사 결과 분석

1. 설문 조사와 델파이 조사 결과 비교 분석

델파이 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로 나타난 정책방향에 대한 검증은 위해 지난 12월 10일에 실시된 경찰청 인권센터의 인권교육 심화과정에 참석

한 경찰청, 전국 16개 지방청 인권담당자, 경찰서와 지구대 근무자 등 인권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자의 구성은 교육 대상자 경찰청 14명, 지방경찰청 16명,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22명으로 총 52명이었고, 이 가운데 응답자는 41명으로 78.8%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델파이 분석의 2차 설문지를 활용하여 인권의식과 경찰장구 사용 인식, 인권의식 제고 방안, 인권 교육 방안, 인구사회학적 특징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로 인권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분석하고, 델파이 분석으로 제시된 전문가의 견해와 비교·분석하였다.

이 비교 분석에서는 사실 표준편차는 큰 의미가 없으나, 전문가 그룹과 인권 담당자 그룹의 경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기재하였다. 5점 척도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중앙값은 3으로도 두고 낮을수록 “그렇다”는 응답이고, 높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응답으로 판단하면 된다. 단, 부정형의 문항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다.

가. 인권의식 정도 비교

두 그룹의 비교에서 경찰활동에 있어서 인권의식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항목에는 대부분 “그렇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권의식 정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보다 그리 높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시민이 언론을 통해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보다 높게 “그렇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찰권 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경찰재량권에 대한 시민과 경찰의 견해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보다 더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보호 활동에 대한 경찰과 시민의 일치감에 대해서는 두 그룹 모두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3-13〉 인권의식에 대한 인식 정도 비교

문항 번호	항 목	2차 결과		설문 결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1	우리나라의 인권의식 정도	1.89	0.782	2.54	0.977
1-2	경찰의 인권의식정도	2.33	0.707	2.51	0.925
1-3	경찰권 발동에 대한 시민 인식	3.22	0.833	3.54	0.897
1-4	경찰활동의 기본은 인권의식	1.33	0.500	1.56	0.634
1-5	경찰재량권에 대한 시민과 일치감	3.44	0.726	3.80	0.928
1-6	언론을 통한 경찰활동 인식도 형성	2.11	0.601	1.85	0.727
1-7	시민에게 경찰활동 충실한 설명	2.56	0.527	2.54	0.897
1-8	인권보호에 경찰과 시민 일치감	3.33	0.500	3.27	1.049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 빈도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인권의식은 전반적으로 높다는 응답은 64.7%로 높게 나타났으나, 경찰의 인권의식은 58.5%가 높다고 응답하여 전체 사회의 인권의식보다는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경찰권 발동에 대해 시민의 인식은 51.2%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하고 있고, 언론에 의한 시민의 경찰활동 인식은 85.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대단히 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3-14〉 인권업무 담당자의 인권의식에 대한 인식 의견 빈도

항 목	응답	빈도(명)	비율(%)	계
우리나라의 전반적 인권의식은 높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5	12.2	41 (100.0)
	그런 편이다	17	41.5	
	보통이다	12	29.3	
	그렇지 않다	6	14.6	
	전혀 그렇지 않다	1	2.4	
우리 경찰의 인권의식은 높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3	7.3	41 (100.0)
	그런 편이다	21	51.2	
	보통이다	10	24.4	
	그렇지 않다	6	14.6	
	전혀 그렇지 않다	1	2.4	

경찰권 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긍정적이다.	매우 그렇다	0	0	41 (100.0)
	그런 편이다	5	12.2	
	보통이다	15	36.6	
	그렇지 않다	15	36.6	
	전혀 그렇지 않다	6	14.6	
경찰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 의식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21	51.2	41 (100.0)
	그런 편이다	17	41.5	
	보통이다	3	7.3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경찰활동에 있어서 경찰재량권에 대해 시민과 경찰의 견해는 일치하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0	0	41 (100.0)
	그런 편이다	4	9.8	
	보통이다	10	24.4	
	그렇지 않다	17	41.5	
	전혀 그렇지 않다	10	24.4	
시민은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을 주로 언론을 통해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매우 그렇다	13	31.7	41 (100.0)
	그런 편이다	22	53.7	
	보통이다	5	12.2	
	그렇지 않다	1	2.4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경찰은 경찰활동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해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매우 그렇다	2	4.9	41 (100.0)
	그런 편이다	19	46.4	
	보통이다	14	34.1	
	그렇지 않다	6	14.6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경찰의 인권보호 활동에 대해 시민은 경찰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매우 그렇다	1	2.4	41 (100.0)
	그런 편이다	5	12.2	
	보통이다	18	43.9	
	그렇지 않다	13	31.7	
	전혀 그렇지 않다	4	9.8	

나. 장구 사용에 대한 인식 비교

장구 사용에 대한 인식은 전문가 그룹과 인권 담당자 그룹의 인식이 크게 차이나는 문항은 없었다. 다만 시민은 경찰의 적법한 장구사용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표에서 보면 63.4%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장구 사용 시 경찰의 인권보호의식 수준은 전문가 그룹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장구 사용에 있어서 인권보다 위협예방과 도주방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65.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전문가 그룹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차이라고 하겠다.

<표3-15>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인식 비교

문항 번호	항 목	2차 결과		설문 결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1	장구 사용 시 경찰 인권보호의식	2.11	0.601	2.32	0.820
2-2	장구 사용 시 적법절차 준수 중요도	1.44	0.726	1.56	0.673
2-3	효율적인 장구 개발과 인권보호	1.78	0.667	1.61	0.666
2-4	시민의 장구 사용에 대한 인식정도	2.67	1.000	2.32	0.986
2-5	장구 사용 위협예방과 도주방지 중요도	2.78	1.302	2.27	1.205
2-6	언론의 장구 사용 인권침해우려 영향	1.89	0.333	1.80	0.749
2-7	장구 사용 시 매뉴얼의 필요성	1.67	0.707	1.59	0.741
2-8	장구 사용 시 재량권의 보장	1.78	0.833	1.80	0.928
2-9	장구 사용에 대한 규정의 준수 정도	2.22	0.667	2.07	0.685
2-10	장구 사용 규정준수와 인권보호와의관계	1.67	0.500	1.54	0.552

<표3-16>인권업무 담당자의 장구 사용 인식에 대한 의견 빈도

항 목	응답	빈도(명)	비율(%)	계
경찰은 장구사용 시 인권보호의식이 높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5	12.2	41 (100.0)
	그런 편이다	22	53.7	
	보통이다	10	24.4	
	그렇지 않다	4	9.8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매우 그렇다	22	53.7	41 (100.0)
	그런 편이다	15	36.6	
	보통이다	4	9.8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효율적인 경찰장구의 개발은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	20	48.8	41 (100.0)
	그런 편이다	17	41.5	
	보통이다	4	9.8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시민은 경찰의 적법한 장구 사용에 대해 부정적이다.	매우 그렇다	8	19.5	41 (100.0)
	그런 편이다	18	43.9	
	보통이다	10	24.4	
	그렇지 않다	4	9.8	
	전혀 그렇지 않다	1	2.4	
경찰이 장구사용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부분은 인권보다 위험예방과 도주방지이다.	매우 그렇다	11	26.8	41 (100.0)
	그런 편이다	16	39.1	
	보통이다	5	12.2	
	그렇지 않다	8	19.5	
	전혀 그렇지 않다	1	2.4	
경찰장구 사용에 의한 인권 침해 우려는 언론에 의해 더욱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	매우 그렇다	15	36.6	41 (100.0)
	그런 편이다	20	48.8	
	보통이다	5	12.2	
	그렇지 않다	1	2.4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경찰장구 사용 절차 매뉴얼은 반드시 필요하다.	매우 그렇다	22	53.7	41 (100.0)
	그런 편이다	15	36.6	
	보통이다	3	7.3	
	그렇지 않다	1	2.4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서 재량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매우 그렇다	19	46.3	41 (100.0)
	그런 편이다	14	34.1	
	보통이다	5	12.2	
	그렇지 않다	3	7.3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치안현장에서 장구사용 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7	17.1	41 (100.0)
	그런 편이다	25	61.0	
	보통이다	8	19.5	
	그렇지 않다	1	2.4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장구사용 규정의 준수는 인권보호에 이바지 한다.	매우 그렇다	20	41.5	41 (100.0)
	그런 편이다	20	34.1	
	보통이다	1	24.4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다. 인권의식 제고 방법에 대한 견해 비교

〈표3-17〉 인권의식 제고 방법에 대한 견해 비교

문항 번호	항 목	2차 결과		설문 결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1	인권보호에 대한 경찰청 훈령 인지도	1.56	0.882	1.83	0.803
3-2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활동성	2.78	0.667	2.59	0.774
3-3	민원센터의 인권보호센터 활용	1.78	0.441	1.85	0.937
3-4	인권센터의 확대와 담당부서 설치	1.89	1.054	1.83	0.803
3-5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경찰 업무 부담	2.78	1.093	2.32	1.105
3-6	성과평가에 인권의식 반영의 효과성	1.89	0.601	2.49	1.028
3-7	경찰활동 인권의식에 경찰과 시민 공동의식	1.44	0.527	1.46	0.596

인권의식 제고 방법에 대한 인권 담당자들의 견해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전문가 집단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경찰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문항에는 전문가보다 더 높게 그렇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도 “그렇다”는 응답이 60.9%를 나타내고 있다.

또 성과평가에 인권의식을 반영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보다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경찰에서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현장 경찰의 입장이 더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과평가에 인권의식 노력을 반영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현장에 부담감을 더 준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전반적인 인식 정도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권센터의 활성화와 민원센터의 상담창구 활용, 경찰활동 있어서 인권의식 향상은 경찰과 시민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표3-18〉 인권업무 담당자의 인권의식 제고 방법에 대한 의견 빈도

항 목	응답	빈도(명)	비율(%)	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에 대해 알고 있다.	매우 그렇다	17	41.5	41 (100.0)
	그런 편이다	14	34.1	
	보통이다	10	24.4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경찰청(지방청) 인권위원회의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2	4.9	41 (100.0)
	그런 편이다	18	43.9	
	보통이다	16	39.0	
	그렇지 않다	5	12.2	
	전혀 그렇지 않다	0	0	
민원센터가 진정업무 접수에 그치지 않고 상담·대응 인권센터로 활용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할 것이다.	매우 그렇다	14	34.2	41 (100.0)
	그런 편이다	20	48.8	
	보통이다	5	12.2	
	그렇지 않다	1	2.4	
	전혀 그렇지 않다	1	2.4	
전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센터(담당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매우 그렇다	16	39.0	41 (100.0)
	그런 편이다	17	41.5	
	보통이다	7	17.1	
	그렇지 않다	1	2.4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권고는 경찰업무에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11	26.8	41 (100.0)
	그런 편이다	14	34.1	
	보통이다	9	22.0	
	그렇지 않다	6	14.6	
	전혀 그렇지 않다	1	2.4	
성과평가에 있어서 인권의식 항목을 반영하는 방법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5	12.2	41 (100.0)
	그런 편이다	19	46.3	
	보통이다	12	29.3	
	그렇지 않다	2	4.9	
	전혀 그렇지 않다	3	7.3	
경찰활동에 있어서 인권의식 향상은 경찰과 시민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매우 그렇다	24	58.5	41 (100.0)
	그런 편이다	15	36.6	
	보통이다	2	4.9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라. 장구 사용과 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 비교

〈표3-19〉 장구 사용과 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 비교

문항 번호	항 목	2차 결과		설문 결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4-1	인권교육의 충분성	2.00	0.707	2.68	0.907
4-2	신입경찰교육의 인권교육이 중요	2.11	0.928	1.90	0.944
4-3	상시학습시간에 인권교육 실시	2.11	0.601	1.83	0.738
4-4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권교육 필요성	1.89	0.782	1.68	0.687
4-5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1.67	0.707	1.66	0.656
4-6	장구 사용 교육과 인권교육의 병행 효과성	1.44	0.527	1.54	0.552
4-7	교육시간은 업무시간 내 활용	1.56	0.726	1.71	0.782
4-8	장구 사용 교육은 실습위주로 진행	1.44	0.882	1.63	0.888
4-9	업무 연계성 고려 종합교육 프로그램 마련	1.33	0.500	1.39	0.494
4-10	주기적인 장구 사용 교육과 성과평가 반영	2.22	0.972	2.27	1.049

전문가 그룹이 인권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하여 인권담당자 그룹은 보통에 가까운 견해를 보이고 있는 점이 크게 차이가 있다. 인권 담당자 그룹의 46.3%만이 교육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고, 53.7%가 보통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2%를 차지하고 있어 현장에서 인권교육 실시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입경찰관의 인권교육에 대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상시학습제도의 활용과 지역사회의 연결에 대해 전문가 그룹보다 더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은 두 그룹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3-20〉인권업무 담당자의 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빈도

항 목	응답	빈도(명)	비율(%)	계
경찰의 인권교육은 현재 충분히 실시되고 있다.	매우 그렇다	3	7.3	41 (100.0)
	그런 편이다	16	39.0	
	보통이다	19	31.7	
	그렇지 않다	9	22.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인권교육은 신입경찰교육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매우 그렇다	17	41.5	41 (100.0)
	그런 편이다	14	34.1	
	보통이다	7	17.1	
	그렇지 않다	3	7.3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인권교육의 상시학습시간 반영은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그렇다	15	36.6	41 (100.0)
	그런 편이다	18	43.9	
	보통이다	8	19.5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지역사회, 교육기관과 연계한 인권교육은 유용할 것이다.	매우 그렇다	15	36.6	41 (100.0)
	그런 편이다	22	53.6	
	보통이다	4	9.8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가 초청, 상황극 등 다양화가 필요하다.	매우 그렇다	18	43.9	41 (100.0)
	그런 편이다	19	46.3	
	보통이다	4	9.8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장구사용 교육과 인권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효과성이 향상될 것이다.	매우 그렇다	20	48.8	41 (100.0)
	그런 편이다	20	48.8	
	보통이다	1	2.4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교육시간은 업무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19	46.3	41 (100.0)
	그런 편이다	16	39.0	
	보통이다	5	12.2	
	그렇지 않다	1	2.4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장구사용 교육은 실습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매우 그렇다	24	58.5	41 (100.0)
	그런 편이다	10	24.4	
	보통이다	5	12.2	
	그렇지 않다	2	4.9	
	전혀 그렇지 않다	0	0	
교육프로그램은 업무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매우 그렇다	25	61.0	41 (100.0)
	그런 편이다	16	39.0	
	보통이다	0	0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장구사용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성과평가에 반영되어야 효과적이다.	매우 그렇다	11	26.8	41 (100.0)
	그런 편이다	14	34.1	
	보통이다	11	26.8	
	그렇지 않다	4	9.8	
	전혀 그렇지 않다	1	2.4	

인권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표3-12>와 비교하여 전문가 그룹은 소규모 그룹학습에 전원 찬성한 반면, 인권 담당자 그룹은 대규모 집단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었다. 또 전문가 그룹이 오프라인 직접 강의를 가장 좋은 학습 방법으로 꼽는데 반해 인권 담당자 그룹은 시청각 매체나 인터넷 강의에 의한 교육도 29.2%가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횟수에 대해서는 두 그룹이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표3-21> 인권교육 방법에 대한 의견 비교

번호	항목	빈도(명)	비율(%)	계	
4-11	학습그룹의 규모	대규모 집단학습	3	7.3	41 (100.0)
		소규모 그룹학습	38	92.7	
		개인별 개별학습	0	0	
4-12	학습 방법	시청각 매체	6	14.6	41 (100.0)
		인터넷 강의	6	14.6	
		오프라인 강의	29	70.8	
4-13	학습 횟수	일회성 강의	0	0	41 (100.0)
		필요시 부정기적 강의	19	46.3	
		정기적 수회 강의	22	53.7	

인권 담당자의 경우 교육의 효과성보다 현실적인 교육방법에 대해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하다. 현장에서의 경험이나 현장 상황이 소규모 그룹으로 직접 강의를 진행하기에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의 교육 방법에 대해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두 그룹 모두 정기적 강의의 중요성에 인지도는 비슷하였다.

2.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른 차이점 분석과 제안점 도출

가. 델파이분석과 설문조사분석의 차이점

전문가 그룹과 인권 담당자 그룹의 경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경찰의 인권보호 의식에 수준에 대한 부분과 시민의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과 재량권 행사에 대한 견해가 전문가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민의 장구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셋째,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경찰활동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전문가 보다 높았고, 성과평가에 인권의식 제고 활동을 반영하는 데에 부정적이었다.

넷째,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시학습제도의 운영과 다양한 학습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인 항목에 대해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나, 빈도상의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전문가 그룹보다 현장에 더 가까이 있으며,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점은 델파이 분석의 결과에 덧붙여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제안점 도출

이상에서 인권침해 현황 분석과 장구 사용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제 사항을 고려하여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의 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장구 사용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조사 분석에서도 장구 사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엄격한 절차 준수 규정 준수가 요청되었다. 더구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시민의 경찰 장구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가능성에 더하면 장구 사용 절차 규정을 구체화 하고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치안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경찰의 인권의식이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시민과 소통하면서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언론에 의해 경찰의 이미지나 장구 사용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민과 경찰의 인식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구체적이지 않은 재량권 범위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부족하여 경찰의 재량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법집행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적절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경찰과 시민 사이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인식 차이 극복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경찰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장 경찰도 시민도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권은

앞으로도 경찰활동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기에 철학적 토대 마련을 위한 연구와 활발한 인권홍보 활동, 인권보호 활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인권센터를 ‘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청이나 경찰서 단위에도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민원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표3-22> 인권의식 제고의 문제점과 제안점

사례분석 문제점 도출	텔파이분석 제안점	설문조사 추가 제안점
-장구 사용 절차규정의 준수 요청	-장구사용에 구체적 규정 필요 -엄격한 절차 준수 요청	-시민의 경찰장구 사용 부정적 인식 높음
-현장에서 기본적 인권보호 의식 소홀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언론 인식변화 필요	-경찰활동에 대한 언론의 영향 요인 높음
-현장에서 재량권 범위 인식 곤란	-경찰의 재량권 보장 공정한 법집행	-경찰의 재량권에 대해 시민과 인식 차이
-	-인권센터 확대 개편 -민원센터 적극 활용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부담감
-	-경찰업무의 연계성 종합교육프로그램 필요	-상시학습운영 다양한 학습방법 필요
-	-인권보호 노력 성과평가에 반영	-

다섯째, 경찰업무는 다방면에 걸쳐있어 업무연계의 필요성이 크고, 인 권은 어느 업무에도 기본이 되는 부분이므로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교육 프로그램도 더 많은 경찰과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하며, 교육 방식에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론적인 강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할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현재 실시중인 상시학습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여섯째,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 성과평가에 반영하거나 징계에 대해 상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획기적인 기획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안점을 토대로 경찰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생각해보았다.

제4장 인권의식 제고 방안

제1절 장구 사용에 대한 절차적 민주성 확보

1. 장구 사용 절차의 엄격한 준수

경찰업무 현장에서는 다양한 가치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충돌할 때가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어떤 가치를 우선에 두어야 하는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절차에서 벗어날 경우 무책임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럴 경우 법에 의한 지배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적합한 판단이라 하겠다. 절차적 민주성의 확보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앞의 인권침해 사례에서 법의 기준이 경찰활동의 근간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그 범주를 넘어선 순간 법은 부당한 재량권 행사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보았다. 크고 작은 인권침해 권고 사례에서 그 내용에 경중이 있더라도 법의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똑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되었던 사례도 볼 수 있었다.

적법한 범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민의 불신도 같이 가져오게 된다. 절차준수는 시민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경찰관 자신과 피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절차를 벗어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물리력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숙지, 그리고 정확한 사례를 통한 매뉴얼을 보급 등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해볼

수 있다. 또한 정기적인 장구 사용 교육을 통해 이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

2. 경찰 재량권의 구체화

경찰활동은 치안 환경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윤리적 행동 기준을 가지고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합법성, 상당성, 필요성, 책임성이다.

법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는 합법성, 적극적인 재량권 행사를 필요로 하는 상당성,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는 절대적 필요성과 위험에 의한 긴급한 사회적 필요성인 민주적 필요성, 시민의 침해된 권리의 효과적인 구제수단으로서의 책임성은 경찰활동에 있어서 인권보장의 기준으로 경찰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걸러주는 필터가 될 수 있다.⁴⁷⁾

변수가 많은 경찰활동 현장에서 빠른 대처와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경찰의 재량권 범위를 법령에서 구체화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법집행이 위축되지 않고, 권한남용의 문제도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수갑은 죄의 경중에 따라, 위험성과 상황판단에 따라 경찰의 재량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장구 사용은 경찰과 피체포자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명확한 규정은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영국의 경우 수갑 사용에 있어서 구체화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경찰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고 있다. 추상적인 명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경찰이 장구를 사용하는데 있어 재량범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에서 경찰의 재량권은 1950년대부터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일상

47) 최규범, 앞의 논문, 2007, 176-184쪽.

적인 경찰 재량권은 경찰의 역할이 합법적인 강제력 사용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 결정과 동등하다는 입장까지 취하였다. 그러나 재량권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 자유재량에 의한 권한 남용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에서 제재를 권고했고, 경찰활동상의 재량권은 공식적으로 재량권의 제한 범위를 두고, 그 안에 재량의 시행에 대한 지침을 두도록 하였다.⁴⁸⁾

현재 우리나라의 장구 사용에 관한 규정은 추상적인 의미의 인권보호만을 규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반법의 추상적 규정이 아닌 법집행시에 기준이 될 수 있는 구체화된 내용의 법령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재량권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물리력이 사용되는 장소나 상황에서 시민 모니터링제도를 활용하여 피의자의 인권과 경찰의 인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제2절 인권의식의 변화를 위한 시민 점점 확보

박경서(2012)는 인권이란 서로 양보하면서 즐겁게 나누는 것으로, 인권 존중의 문화를 생활 속에 심을 수 있도록 공중도덕을 가르치는 것에서 인권교육이 시작된다고 하였다.⁴⁹⁾ 즉 인권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인권의식은 몇 차례의 교육으로 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경찰활동은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업무이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의사소통과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48) 마이클 J. 팔미오토(양문승 역), 지역사회 경찰활동론, 대영문화사, 2011, 108-116쪽.

49) 박경서, 앞의 책, 미래지식, 2012. 참조.

1. 시민과 경찰의 인권 책임성 제고

인권의식에 대해서는 경찰과 시민 모두가 지녀야 할 덕목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민의 인권의식과 경찰의 인권의식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인권의식이 높은 것과는 별개로 경찰장구의 사용, 즉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해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법집행을 위해 법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물리력에 대해서는 옹호하지만, 자칫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의해 저질러진 고문, 폭행 등의 기억이 남아 있는 까닭이기도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의 경찰이 그 절차나 행위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소통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평소 지역경찰활동을 통해 지역 시민들과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두고,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에 대해 경찰관의 활동에 대해 공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회성 홍보가 아닌 지속적인 교류를 해야 하겠다.

반대로 시민의 경우에도 경찰활동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시민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대상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인권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다. 경찰과 시민이 인권존중에 대해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이 인권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민원센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접점 마련

현재 경찰서의 민원센터에서는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진정 접수는 받고 있으나, 전문적인 인권교육 인력은 없는 관계로 상담을 진행

하거나, 인권보호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대의 경찰활동은 시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시스템을 통해 범죄예방을 하는 시대이다. 얼마 전 해양경찰에서는 선원, 양식장, 염전 등 해.수산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의 열악한 상황과 임금체불, 폭행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외국인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차단하는 특별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다.⁵⁰⁾

경찰은 이와 같은 적극적인 인권보호 활동을 통해 인권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민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인권 상담을 실시하고, 인권교육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면 인권 홍보 역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인권 침해와 외부적 인권침해 상황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언론 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경찰장구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언론은 인권침해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업무 상황이나 근무일지 기재에 대한 부분에는 그다지 언급하지 않았었다. 또 장구 사용으로 인해 인권침해 결정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이 구시대적으로 아직도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장구 사용이 부실하여 도주자가 발생했을 때는 법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 경찰의 부실함과 책임성을 논하였다.

이와 같은 언론의 태도에 대해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언론 매체는 경찰 이미지나 인권의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경찰활동에서 시민에게 홍보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성이 있다. 경찰은 수많

50) 아시아 뉴스통신(<http://www.anews.com/>), 2013.10.20.

은 업적을 쌓으면서도 이에 대한 홍보가 대단히 부족한 조직이다. 향후 발전적인 홍보 방안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내용도 추가하여 인식 변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제3절 인권보호 관련 시스템 측면 개선방안

1. 경찰청 인권위원회 활성화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3장에 인권보호기구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 인권과 관련된 경찰의 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자문과 개선권고 및 의견 표명, 2.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3. 경찰관련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임무로 하고 있다. 또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위원회 및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청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1. 경찰의 인권시책과 관련된 본인이나 주민들의 의견 제시, 2. 인권침해 사례 발견한 경우 지방청장에게 통보, 3. 유치장 인권보호 실태 확인, 4. 집회시위 과정의 모니터링, 5. 사회적 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 과정 참여, 6. 인권교육 강의, 7. 기타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한 사항이 임무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형식적인 월례회의 개최나 관련 시설 방문 등은 실시하고 있으나 그 밖의 임무에 대해서는 이렇다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위원들의 선출이 객관화되지 않고, 인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도 추천을 통해 선발되고 있어 관련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 인권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위원회의 구성으로는 활동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내실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출하고, 현실적인 조사나 권고, 의견표명 등의 역할을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내부 인권침해와 경찰 진정 사건에 대한 민간의 참여로 인권보호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어야 하겠다.

또 각 위원은 위원회 위촉부터 활동까지 표준안을 제시하여 이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그 활동내용에 대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인권위원회의 활성화는 경찰의 인권보호 노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인 필터 장치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부담감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인권센터의 확대 방안

현재 인권센터는 감사관 인권보호담당관실로 설치되어 있다. 조직은 ‘실’ 아래 인권보호계와 인권조사계가 구분되어 있고 현재 인력은 작년 2명을 감축하여 경찰관 7명, 행정관 6명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 담당으로 2명의 파견 행정관이 보강되어 구성원은 15명이지만 인권센터의 업무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인원으로 생각된다.

현재 인권센터는 대국민 홍보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아카데미 개최, 내부 인권 전문 경찰관 양성, 인권 담당자 심화 교육과정 운영, 일선 현장 교육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권영화제 개최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인권조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 인

권교재 발간과 교육자료 제작 등의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방면에 걸쳐 인권경찰로서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더 많은 시민들과 접점을 마련하고, 인권보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국’ 단위로 조직 승격과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 현재 인권센터는 직접적인 경찰활동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경찰활동에서 중요한 인권은 모든 업무의 기반이 되는 철학이기 때문에 인권센터의 활동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경찰 스스로 인식의 전환을 꾀해야 시민들도 경찰의 인권의식에 대해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1. 인권센터의 소규모 그룹 학습 활성화

경찰청 인권센터에서는 주로 소규모 그룹 학습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호응이 좋지만, 다수의 인권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 한계가 있다. 반면 일선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은 직무교육이나 관서장의 훈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인권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최근 인권센터에서는 인권교육 표준강의안을 제작하여 공통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인권 전문 경찰관을 양성하여 강의요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은 있지만, 교육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현장학습 진행으로 교육훈련시간의 성과반영, 상시학습운용 시간에 포함, 실습위주의 교육, 외부강사 초청 등의 방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또 장구 사용과 인권 교육 병행이 인권의식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는 의견도

많았다.

2. 상시학습제도의 활용

지난 11월 1일부터 실시된 상시학습제도는 현재 경정 이하의 해당자에게 60시간 이상 이수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2015년 말부터는 70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의무교육은 지정학습과 비지정학습으로 이루어지는데 인권교육의 경우 지정학습으로 센터 교육과 사이버 교육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조사결과에서 현장의 인권업무 담당자들은 지역의 경우 사이버 교육이나 온라인 강좌에 호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센터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그룹 교육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교육 여건 형성이 어려운 때문일 수도 있다. 하여 현장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위해 표준강의안을 제작하였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장구 사용 교육에 인권교육을 가미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나 장구 사용의 기본은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장구 사용 실습 중 표준강의안을 활용하여 동시에 진행한다면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의견은 향후 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

1. 인권보호 노력의 성과평가 반영

모든 경찰활동의 바탕에 인권이 자리 잡고 있으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인권 담당자 외에는 인권보호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성과평가의 항목에 일부 들어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반영할만한 지표는 개발되지 않았다. 인권보호에 대한 경찰 내부의 관심이 요청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직장 내 전문가 양성을 통해 인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홍보하고 다양한 인권보호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포상하거나,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노력을 통해 내부의 관심도 유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한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성과 평가 반영은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현장 인권 담당자는 낮은 필요도를 나타내고 있어 인권부서 외부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인권 전문가 양성제도는 최근 경찰관들의 자기개발 노력에 의한 관심이나 업무상 관심 등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는 제도로 생각된다. 다만 내부 교육자로 양성하는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심화과정 등 재교육을 꾸준히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시민 참여 유도

조사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역사회 참여는 시민의 경찰 인권의식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인권지킴이로 활동하게 하고, 지속적인 의견을 교류하며, 인지도가 높은 지역경찰과 시민이 함께하는 인권 프로그램 참여는 인권보호에 대한 시민의 인식도 제고와 함께 시민과 경찰관간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직간접적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대변인실에서는 SNS를 활용한 홍보, TV를

통한 범죄예방·검거 방송제작 지원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소통계의 카카오토티 활용 역시 시민과 꾸준히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인권보호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그 시행 시기를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단기, 2~3년 진행해야 하는 중기,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로 나누고,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계속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표4-1>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인권의식 제고 기본방향과 대응방안

분야	기본방향	대응방안
장구 사용에 대한 절차적 민주성의 확보	-장구 사용에 대한 절차의 엄격한 준수	- 충분한 규정의 숙지(단) - 정확한 사례의 매뉴얼 제작(단) - 정기적인 장구 사용 교육(계속) - 물리력의 기준 마련(중)
	-경찰 재량권의 구체화	- 추상적으로 산재된 법령의 통합(중) - 재량권에 대한 법령의 구체화(중) - 시민 모니터링제도 실시(중장기)
인권의식 변화	-시민과 경찰의 인권 책임성 제고	- 시민과 소통창구 확대(중) - 시민대상 인권프로그램 운용(계속) - 지역경찰활동으로 시민과 소통(계속)
	-민원센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점점 마련	- 민원센터의 상담기능 강화(중) - 인권홍보기능 강화(중)
인권보호 시스템 개선방안	-경찰청 인권위원회 활성화	- 인권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단) - 조사,권고,의견 표명의 여건 형성(단) - 내부 인권침해와 진정사례 결정 참여(단) - 인권위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중)

	-인권센터의 확대 방안	-‘국’ 단위로 조직 승격개편 필요(장) - 충분한 인력과 지원 필요(중/계속) - 경찰 철학 연구 지원(중장기)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인권센터의 소규모 그룹 학습 활성화	- 소규모 그룹 인권강의 필요(계속) - 표준강의안 자료의 활용(단) - 실습위주, 외부강사 초청 필요(계속) - 장구 사용과 인권교육의 병행(계속)
	-상시학습제도의 활용	- 지방교육은 온라인과 사이버 교육 실시 방안(단) -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시(단) - 교육성과를 상시학습제도에 반영(단)
인권보호 아이디어 개발	-인권보호 노력의 성과 평가 반영	- 직장 내 아이디어 공모 성과평가 반영(단) - 외부 부서의 인식 변화 유도(중장기) - 직장 내 전문가 양성시 재교육 실시(계속)
	-시민 참여 유도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실시(계속) - 지역경찰의 인권교육 참여로 신뢰 형성(중장기) - 인권지킴이 등 지역사회에 인권프로그램 운영(중)

제5장 결론

이 연구는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서 인권보호 방안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특히 치안 현장에서 인권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업무환경 형성,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인권보호를 위한 조직의 변화, 나아가 인권보호와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한 시민과 경찰의 인식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연구를 진행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 협조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대신할 인권의식과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분석, 전국의 인권보호 담당자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연구 방법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경찰장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분석에서의 결과는 첫째, 장구 사용 절차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장구의 부당 사용의 경우 사용 절차 규정만 준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사례들이었다. 둘째, 업무 현장에서 기본적인 인권 보호의식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업무량과 피의자나 신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인권보호라는 측면에 소홀해진 경우가 있었으며, 고의적으로 받을 거는 행위의 경우 인권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업무 현장에서 재량권의 범위에 대한 한계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량권의 부분은 양쪽 측면을 갖고 있는데,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이 장구를 사용해야만 하는 재량을 충분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넷째, 국가인원위원회의 결정례의 기준 정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분명 법령과 판례에 따라 장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는 하지만, 똑같이 인권교육 권고를 내리는 사례에도 그 경중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다.

다음으로 델파이 조사 결과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첫째, 장구 사용에 있어서 인권보호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절한 규정의 마련과 절차적 준수의 요청된다는 것, 둘째, 경찰활동과 장구 사용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과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셋째,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의 재량권을 보장하여 절차 내에서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넷째, 전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민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인권상담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의 필요하다는 것, 다섯째, 경찰의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부분이었다.

교육 방법으로는 소규모 그룹 형식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중심으로 하되 정기적인 교육과 필요시 비정기적 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 이론보다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외부 강연자 초청과, 피교육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실습 체험형 교육 방식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설문 결과에서는 첫째, 경찰의 인권보호 의식에 수준에 대한 부분과 시민의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과 재량권 행사에 대한 견해가 전문가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민의 장구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셋째,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경찰활동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전문가 보다 높았고, 성과평가에 인권의식 제고 활동을 반영하는 데에 부정적이었다. 넷째,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

시학습제도의 운영과 다양한 학습방법에 대해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서 인권의식 제고의 방향성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구사용에 대한 절차적 민주성의 확보 분야에서는 1) 장구 사용에 대한 절차의 엄격한 준수에 따른 충분한 규정의 숙지, 정확한 사례의 매뉴얼 제작, 정기적인 장구 사용 교육, 물리력의 기준 마련을 2) 경찰 재량권의 구체화에서는 추상적으로 산재된 법령의 통합, 재량권에 대한 법령의 구체화, 시민 모니터링제도 실시를 대응방안으로 들었다.

둘째, 인권의식 변화 분야에서는 1) 시민과 경찰의 인권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시민과 소통창구 확대, 시민대상 인권프로그램 운용, 지역경찰 활동으로 시민과 소통을 2) 민원센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점점 마련을 위해서는 민원센터의 상담기능 강화, 인권홍보기능 강화를 제시하였다.

셋째, 인권보호 시스템 개선방안 분야에서는 1) 경찰청 인권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인권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조사, 권고, 의견 표명의 여건 형성, 내부 인권침해와 진정사례 결정 참여, 인권위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를 들었고, 2) 인권센터의 확대 방안을 위해서는 ‘국’ 단위로 조직 승격개편 필요, 충분한 인력과 지원 필요, 경찰 철학 연구 지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분야에서는 1) 인권센터의 소규모 그룹 학습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그룹 인권강의, 표준강의안 자료의 활용, 실습 위주, 외부강사 초청, 장구 사용과 인권교육의 병행을 들었다. 2) 상시학습제도의 활용에서는 온라인과 사이버 교육 실시,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시, 교육성과를 상시학습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들었다.

다섯째, 인권보호 아이디어 개발 분야에서는 1) 인권보호 노력의 성과평가 반영을 위해 직장 내 아이디어 공모 성과평가 반영, 외부 부서의 인식 변화 유도, 직장 내 전문가 양성 시 재교육 실시를 2)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실시, 지역경찰의 인권교육 참여로 신뢰 형성, 지역사회에 인권프로그램 운영과 인권지킴이제도를 제시하였다.

특히 인권교육의 경우 현재 다양한 인권의식 제고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인권교육의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활동에 있어서 인권이란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비율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사와 생활안전(지역경찰) 분야뿐만 아니라 경비, 교통, 정보, 감찰, 의사 등 법률에 근거를 둔 경찰활동은 모두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업무이기에 인권존중이라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청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그 노력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서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선행연구로서 기존에 없었던 내용에 대한 기초연구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중장기 대응방안의 수립을 위한 연구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연구의 한계로 후속 연구의 진행을 바라본다.

참고문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경찰청, 2013 경찰백서, 경찰청

경찰청, 경찰관직무집행법 해설서, 경찰청, 2013

국가인권위원회, 2012 인권통계, 국가인권위원회, 2013.

김성재 외, 인권시대를 향하여, 나남출판, 2002.

김수원, 경찰활동과 인권, 한국학술정보, 2007.

마이클 샌델(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마이클 J. 팔미오토(양문승 역), 지역사회 경찰활동론, 대영문화사, 2001.

박경서, 인권이란 무엇인가, 미래지식, 2012.

샌드라 프레드먼(조효제 옮김), 인권의 대전환, 교양인, 2009.

이상안, 인권과 질서, 대명출판사, 2005.

조철옥, 경찰윤리학. 대영문화사, 2012.

최철영, 인권, 생각의 차이 또는 사람의 차이, 열린길, 2010.

2. 논문

강영실, 장애인범죄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고찰, 교정복지연구 제16권, 2009.

- 강희창·김주찬,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의 범죄피해자 지원 및 제도 현황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2호, 2012.
- 김길배, 범죄피해자와 증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미국경찰의 시책, 경찰학연구 제9권, 2005.
- 김문호, 경찰의 체포권 남용방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40권, 2010.
- 김상운, 수사 경찰의 인권보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제4호, 2012.
- 김수원,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인권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영옥, 뉴스미디어의 미래-델파이 조사와 시나리오 기법을 통한 탐색,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 김재민, 경찰관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1호, 2013.
- 김재주, 경찰의 인권정책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경찰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연구 제4권 제1호, 2011.
- 김지선, 경찰공무원의 퇴직준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생애설계 요인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창윤, 경찰안보기관의 역할과 인권, 한국경찰학회보 12호, 2006.
- 도중진, 경찰수사 절차에 있어서 인권보호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적 개선 방안 : 피내사자와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과학수사학 제7권 제2호, 2013.
- 박구용, 인권과 복지의 경계와 상호 제약적 해명, 동서철학연구 제 64호, 2012.
- 박동균·김우준, 피의자 인권을 고려한 경찰서 유치장의 개선방안, 한국경

- 찰연구 제11권 3호, 2012.
- 박용규, 경찰의 총기 장구 사용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한 실태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4권 제2호, 2007.
- 박치동, 델파이와 AHP기법을 활용한 이러닝 기반 교원연수 프로그램 평가 모형 개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백창현, 경찰장구사용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 고찰, 치안정책연구 제29호, 2006.
- 변지희·김상운, 경찰의 테이저 사용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 수사경찰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0권 제1호, 2013.
- 신주호, 경찰수사절차상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1권 2호, 2010.
- 윤경희·박동균,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향 연구-델파이 방법을 활용하여-,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2012.
- 이상훈,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2012.
- 이영남,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경찰윤리 확보방안,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2013.
- _____,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정착화 방향, 한국경찰연구 제7권 4호, 2008.
- 이재호, 경찰활동과 인권보호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2012.
- 임창호, 경찰 인권침해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제3호. 2013.
- 조규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경찰활동에 관한 연

구, 자치경찰연구 제4권 제1호, 2011.

조현빈, 외근경찰의 적극적 인권보호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2호, 2006.

최규범, 미래한국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 : 인간지향경찰활동(HOPE), 경찰학연구 제7권 제3호, 2007.

표창원, 한국과 영국의 경찰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장치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6권 제3호, 2007.

황문규·박형식, 경찰의 고문수사에 의한 인권침해와 근절방안, 경찰학논총 제7권 제2호, 2012.

3. 기타

경찰청 홈페이지(<http://polic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13.12.10. 검색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

뉴스원(<http://news1.kr>), 2013.07.24.

뉴스시스(<http://www.newsis.com>) 2013.11.11.

매일경제미디어 mk뉴스(<http://ews.mk.co.kr>), 2013.07.24.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

아시아 뉴스통신(<http://www.anews.com>) 2013.10.20.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2013.11.01.

영국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uk>)

일본경찰청 홈페이지(<http://www.npa.go.jp>)

II. 외국문헌

- Hounmenou, C., Monitoring Human Rights of Persons in Police Lockups: Potential Role of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Vol.20 No.3. 2012.
- Myrtle, J.; Finnane, M., United Nations seminar on the role of police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Canberra 1963, CRIMINAL LAW JOURNAL -SYDNEY-, Vol.35 No.6, 2011.
- Sangha, K., Microsoft, the Police, and Software Pirates: An Examination of Microsoft's Role in and Response 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Russia, The Journal of Eurasian Law, Vol.4 No.1, 2011.
- Greer, S., Should Police Threats to Torture Suspects Always be Severely Punished? Reflections on the Gafgen Case,(HUMAN RIGHTS LAW REVIEW, Vol.11 No.1, 2011.
- Smith, G., Every complaint matters: Human Rights Commissioner's opinion concerning independent and effective determination of complaints against the polic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Vol.38 No.2, 2010.
- Cape, E.; Edwards, R.A., Police Bail without Charge: The Human Rights Implications,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69 No.3, 2010.

- Smith, J., The discovery in Guatemala of a police archive may help bring human rights violators to justice, *Smithsonian*, Vol.40 No.7, 2009.
- Smith, R., Police, the Public, 'Less Lethal Force' and Suspects: Deconstructing the Human Rights Arguments, *The Police journal*, Vol.82 No.3, 2009.
- Smith, G., European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olice Complaints Initiative, *JUSTICE OF THE PEACE*, Vol.172 No.25, 2008.
- Solis, C., Human Dignity/Human Rights and the Police: Training that Manifests Rule of Law Operations, *PUBLICATION SERIES- EUROPEAN INSTITUTE FOR CRIME P*, Vol.- No.53, 2008.
- Burns, S., Human rights: The police have a duty to protect intimidated witnesses, *The New law journal*, Vol.157 No.7290, 2007.
- O Rawe, M. Human Rights and Police Training in Transitional Societies: Exporting the Lessons of Northern Ireland, *Human rights quarterly*, Vol.27 No.3, 2005.
- Miller, S., Human Rights and the Institution of the Police, *ISSUES IN BUSINESS ETHICS*, Vol.- No.20, 2004.

책임연구보고서 2013-03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서 인권의식 제고 방안 연구

2013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